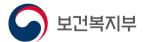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일시: 2017. 3. 7(화) 15:00 ~ 17:0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일시: 2017. 3. 7(화) 15:00~17:0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개최 목적 및 일정

-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아동관련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유엔 제출 예정

사회: 이윤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시 간		내 용	발 표		
15:00 - 15:05	5'	❖ 인사말	(보건	이강호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15:05 - 15:15	10'	• 국가보고서(안) 작성경과 보고		이준석 지부 아동권리과 사무관)	
15:15 - 15:35	20'	• 국가보고서(안) 주요내용 발표 (한국장		김영지 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35 - 16:35	60'	 ▶ 지정토론 1. 황옥경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보육 2. 황혜영 팀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3. 한유정 팀장 (굿네이버스 아동권회 4. 고주애 책임연구원 (초록우산 어떤 5. 정병수 사무국장 (국제아동인권센 6. 김수정 변호사 (민변 아동인권위원 	아동권리본부 리연구소) 린이재단 아동특 터)) 록지연구소)	
16:35 - 17:00	25'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청중 참여	

※ 추가의견 접수 : 3월 10일(금)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설희 전문연구원 이메일(shee05@nypi.re.kr)로 제출 (Tel. 044-415-2152)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준비해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박사님, 토론회 좌장을 맡으신 숙명여대 이재연 교수님, 지정토론을 해주실 황옥경 교수님, 황혜영 팀장님, 한유정 팀장님, 고주애 책임연구원님, 정병수 사무국장님, 김수정 변호사님, 그리고 아동 관계부처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동의 권리와 행복에 큰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생존·보호·발달·참여, 네 가지 부분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98가지 사항을 권고했고,

정부는

입양허가제 도입,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 지원·보호 인프라 증설, 무상보육 실시, 공교육정상화특별법 제정, 자유학기제 시행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우리 아동들이 마음껏 권리를 누린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사회에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받는 과정은,

지난 6년간 정부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 그리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서 제시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보고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온전히 보장하려면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동이 실제 생활하는 지자체는 물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미처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챙기는 아동 NGO, 정책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학계까지 모두가 지혜를 모아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2017년 3월 7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이 강 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통합 국가보고서 작성경과 및 주요내용

('17.3.7,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① 추진 배경 및 경과

-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91년)에 따른 이행상황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 제출 의무**(5·6차 '17.6월 예정)
 - * 1차('94년), 2차('00년) 제출 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자체 심사일정 지연 등을 이유로 3·4차('08년)부터 통합하여 제출
- 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채택**('11년)
 -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 통한 **상시 점검(**′06년~) 및 권고사항 소관부처별 **이행상황 격년 점검(**′12·′14·′16년)
 - * 유보조항(입양허가제 도입 등) 철회, 체벌금지 관련 법령 개정 등 98개 사항
 - ** 복지부 운영 중(~'14년), 독립기구를 운영하라는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위로 이관('15년~)
 - 5·6차 보고서 초안* 마련('16년) 후, 관계부처 검토·보완 중('17년~)
 - * 소관부처 이행상황 정리 및 전문가 의견수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② 작성방향 및 추진체계

- **작성지침***에 따라 11개 영역의 **이행성과, 장애요인, 향후계획 기술**
 - (협약) 시민적 권리·자유, 아동폭력, 장애·보건·복지 등 9개 영역
 - (선택의정서**) 아동 성매매,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 2개 영역
 - \star 영문 2천단어 이내로, 직전 심의 이후부터 보고서 제출 전 상황까지 포괄('11 \sim '17년)
 -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보완 위해 ①무력충돌 참여, ②성매매·음란물, ③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 3개 추가채택, 우리나라는 '04년 ①, ②번 비준

총 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관계부처	회의체						전	년문가 지	문 회의	체	
17개 부처 담당자							학회,	NGO 등	전문가 2	20여5	년 이
2 영역	3 영역	4 영역	5 영역	6 영역	7 9	영역	8 영역	9 영역	10 영역	11 9	경역
	7개 부치	7개 부처 담당지		7개 부처 담당자 학회,	7개 부처 담당자 학회, NGO 등	7개 부처 담당자 학회, NGO 등 전문가 :	7개 부처 담당자 학회, NGO 등 전문가 20여당				

1 영역	2 영역	3 영역	4 영역	5 영역	6 영역	7 영역	8 영역	9 영역	10 영역	11 영역
일반이행 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 조치	아동매매, 성매매 등 선택의정서	무력충돌 참여 관련 선택의정서

③ 향후 계획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심의(3~4월) → 번역·
 감수(5월) → 최종 제출(6월)
 - * 국무총리(위원장), 관계장관 및 민간전문가(위원)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고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아동복지법 제10조)
 - **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일정 확정 시(제출 2~3년 후 예상), 추가보고서* 제출 및 한국정부 심의대표단** 구성
 - * 5.6차 보고서 제출('17.6월) 이후 변화된 상황, 제도 등 기술
 - ** '11년 대표단 구성: 복지부, 고용부, 교과부, 국방부, 법무부, 여가부, 외교부

④ 아동권리 증진 주요성과 및 한계 ('11년 이후)

- ① 일반이행조치: 협약 유보조항 철회, 법·조직·정책·예산·모니터링 등
 - (성과) 입양허가제 도입, 아동권리 모니터링 전담기구 신설
 - (**한계**) 아동예산 부족,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기능 미흡,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이원화
- ② 아동에 대한 정의: 18세까지 아동 권리보장 여부(권고사항 없음)
- ③ 일반원칙: 비차별,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 생존·발달, 의견존중
 - (성과)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아동영향평가 법적근거 마련
 - (한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 실질적 아동참여 미흡
- ④ 시민적 권리·자유: 출생신고, 사상·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 등
 - (성과) 교육과정 상 종교과목 대안 편성, 학생자치활동 보장으로 의사결정 참여 독려
 - (한계) 보편적 출생신고 등 미흡,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활성화 필요
- ⑤ 아동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 유기·방임, 체벌 등
 - (성과) 체벌·학대 관련법령 제·개정, 아동학대 방지대책 등 포괄적 국가전략 추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인프라 증설
 - (**한계**) 완전한 체벌금지 조치 미흡, 자녀 체벌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학대 관련 인력 및 인프라 확대 필요
- 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부모 책임·분리, 양육비 확보, 입양 등
 - (성과) 무상보육 실시 및 육아휴직제 확대, 입양숙려제 도입 및 중앙입양원 설치,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
 - (한계) 일·가정양립 등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미흡

- ⑦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장애아동 권리, 건강증진, 빈곤아동 등
 - (성과) 장애아 특수교육기관 및 통합교육 확대,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아동전담팀 설치, 드림스타트 등 취약아동 지원 확대
 - (**한계**) 특수교육 인력 및 장애아동 교육자료 필요, 부처별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연계 부족
- ⑧ 교육, 여가 및 문화: 교육목표, 직업훈련, 문화·예술활동 등
 - (성과) 공교육정상화특별법 제정 및 관련대책 수립, 창의성 및 진로탐색 위한 자유학기제 시행, 사이버폭력 대책 추진
 - (**한계**) 경쟁적 입시, 사교육 과잉, 여가·놀이문화 및 인프라 부족,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적응 및 진로 지원 부족
- ⑨ **특별보호조치:** 난민, 무국적, 소수민족, 착취, 소년사법 등
 - (성과) 강제소환금지 등에 관한 난민법 제정 및 전담조직 설치, 다문화아동 지원정책 추진, 아동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 (**한계**) 난민아동 출생등록 제도 미비, 최저임금 이하 보수 등 청소년 노동여건 취약
- ⑩ **아동매매·성매매·포르노(제2선택의정서):** 국내외 성매매 방지조치 등
 - (성과) 성매매 단속 및 처벌강화, 공소시효 특례 적용, 해외 성매매 단속·제재 강화
 - (한계) 해외 성매매·범죄 공조수사 어려움
- ① 아동 무력분쟁 참여(제1선택의정서): 징집·입대 최소연령 등
 - (성과) 무력충돌 관련 국제법규 준수를 규정한 군인지위기본법 제정
 - (한계) 북한이탈아동 무력충돌 영향 여부 확인 및 회복지원 절차 부재



- 1. 대한민국은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2011년 10월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는 2011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노력한 성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15년 개정·발표한 국가보고서 작성지침(CRC.C.58.Rev.3)에 따랐다.
- 2. 보고서는 아동권리협약 9개 영역(일반이행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과 2개의 선택의정서(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후속조치 등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 협약이행 점검을 통해 이행 성과와 현황, 이행 장애요인, 향후 이행계획 등을 법령, 제도, 정책 등의 진전상황,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및 현황, 통계정보 등과 함께 제시하였다.
- 3.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아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입양특례법」과 「민법」 개정으로 입양허가제 도입 및 협약 유보조항(제21조) 철회 노력,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선의 이익 취우선 원칙에 기반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2015),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전담조직 마련 및 아동권리위 원회 설치 등으로 독립적 아동권리 모니터링체계 마련,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통한 학대와 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강화, 드림스타트,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등 빈곤아동을 위한 보호·복지 인프라 확대, 위기 아동·청소년 종합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강화, 청소년한부모, 학교밖 청소년, 다문화청소년 등 취약집단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지원 강화, 공교육 정상화 및 전인교육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과 진로교육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차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제정과 같은 지역단위 인권 증진 노력 등이 이루어졌다. 아동·청소년이 생각하는 우리사회의 인권 존중도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 2013년 67.6%, 2014년 70.8%, 2015년 74.2%, 2016년 76.2%).
- 4. 그러나 아동예산 규모의 부족 및 예산관련 중장기적 대책 부재,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 적용 미흡,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의 획기적 개선 부족 등 지속적인 개선과제도 남아

있다. 가정, 학교, 사회 모든 영역에서 아동을 인권의 주체이자 참여권을 가진 시민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고 이들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보편적 출생등록제 마련, 개인청원권에 대한 제3 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등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입시위주 교육제도와 학업 스트레스, 놀이와 여가·문화의 부족, 높은 자살률 등은 보다 혁신적인 교육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기도 하다.

- 5.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 인권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정책과제가 국가정책에서 주류화 되는 데 아동복지법을 통해 제도화한 아동영향평가제도가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성과에 비해 재정적대책이 부족했으므로 이를 위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아동정책및 제도가 아동의 인권신장에 미친 영향과 인권증진 노력을 통해 아동의 삶이 실질적으로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
- 6.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부처 관계자 협업을 통해 그 간의 아동인권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아동·청소년 분야전문가와 부처 관계자가 함께 작성하였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분야의 학계및 현장 전문가, 관련 단체의 광범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보완작업을 실시하였다(2017년 3~4월예정).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정책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고려의 원칙을 지키고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모든 입법적·행정적 노력을 해나가고자한다.



Contents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A. 유보조항	
B. 당사국의 협약 이행의무 (제4조) ·······	• 2
II. 아동의 정의 ·····	16
A. 국내법상 아동의 정의 (제1조) ······	16
Ⅲ. 일반 원칙	18
A. 차별금지 (제2조) ······	18
B.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 (제6조) ·····	20
C.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제3조) ·····	23
D. 아동의 의견존중 (제12조) ······	24
Ⅳ. 시민적 권리와 자유	28
A. 국적취득 및 출생신고 (제7조, 제8조) ······	28
B.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제14조) ·····	28
C. 표현·결사·집회의 자유 (제13조, 제15조) ·····	29
D.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 (제16조) ·····	30
E. 정보접근 (제17조) ······	31
V. 아동에 대한 폭력 ···································	33
A. 체벌 (제39조) ·····	33
B. 아동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제19조, 제24조3항, 제39조) ······	37

VI.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3
А	. 아동의 성장하는 능력에 맞는 가족환경과 부모의 지도 (제5조)	43
В	. 부모의 공동책임, 부모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 (제18조)	43
С.	. 부모로부터의 분리 (제9조)	44
D	. 가족의 재결합 (제10조)	45
E.	. 아동 양육비 확보 (제27조 4항)	46
F.	.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제20조)	47
G	. 보호 및 양육 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 (제25조)	48
Н	. 입양 (제21조)	49
I.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제11조)	52
J.	감금된 부모의 자녀와 교도소에서 모와 함께 사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52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 장애아동 (제23조)	
	. 생존 및 발달 (제6조)	
C.	. 건강 및 보건서비스 (제24조)	56
D	.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복지증진 및 감염병과 비감염성 질환	
	예방 치료 노력	
	. 청소년의 생식보건과 건강한 생활습관 증진 조치	
F.	· 약물남용 보호조치 (제33조) ·····	60
G	. 사회보장과 아동보호 서비스 및 시설 (제26조, 제18조 3항)	62
Н	. 기본적 의식주를 포함, 적절한 생활수준 (제27조 1~3항)	63
	교육·여가 및 문화	
	. 직업 훈련과 지도를 포함한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 교육의 질과 함께 교육의 목표 (제29조)	
С.	. 원주민 및 소수인종의 아동권리 (제30조)	72
D	. 여가 및 문화활동 (제31조)	74

IX. [‡]	특별보 <u>호</u> 조치 ······	76
Α.	난민아동 및 무국적 아동 (제22조)	76
В.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아동 (제30조)	78
C.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제32조)	79
D.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	81
E.	인신매매, 불법거래, 유괴 (제35조)	86
F.	소년사법 운영 (제40조)	88
G.	범죄목격아동 및 피해아동 보호	92
Н.	무력분쟁에 참여한 아동	95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포르노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3	후속조치	97
Α.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조치	97
В.	역와관할권 확립을 위한 입법조치	99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3	후속조치 ······· 1º	ЭО
Α.	이전 최종견해 권고의 이행 1	00
В.	군대 징집을 위한 최소 연령 1	00
C.	자원입대를 위한 최소 연령1	00
D.	국제협력	01
E.	홍보 및 교육	02
브로	1	US
	1,	20

제 장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A. 유보조항

<권고사항 8~9>

1. 입양허가제

- 1. 정부는 협약 제21조 (a)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입양특례법」을 전부 개정하였고, 동법 제11조 '가정법원의 허가' 조항에 의하여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2011. 8. 5. 전부개정, 2012. 8. 5. 시행). 또한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민법」 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 조항을 개정하였다(2012. 2. 10. 일부개정, 2013. 7. 1. 시행). 「가사소송법」 제45조의8에 '입양허가의 절차'를 도입(2013. 7. 30 본조신설 및 시행), 가정법원이 입양의 허가 심판을 할 때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 2. 「입양특례법」,「민법」 및「가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제', '입양숙려제', '양부모자격강화', '파양조건 엄격화', '13세 이상 입양아동의 의견존중' 등 새로운 입양제도가 도입되어 입양되는 아동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협약가입 당시 유보하였던 협약 제21조 (a)항의 유보 철회를 위한 절차가 2017년에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정부는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2013년 5월 서명하였다. 헤이그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발의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2016년 9월 23일 김승희 의원 등 12인 발의)의 국회 통과 시 헤이그협약의 비준도함께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2. 상소권

- 3. 우리나라「헌법」제110조 제4항(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과「군사법원법」제534조(전시·사변 시의특례규정)는 간첩죄, 유해음식물 공급죄, 초병·초소·포로에 관한 죄 등에 대해서는 단심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정부는 협약 제40조 제2항 (b)(v)을 유보해왔다.「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하의 상소권 제한에 대한 유보의 철회를 위해서는 안보상황의 변화와 이에 따른「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1987년「헌법」 개정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상소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고,「군사법원법」 또한 비상계엄 단심제 재판에서 관할관이 한 번 더 심사하여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서 상소권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4. 그러나 현재의 안보상황이나 군입대 연령 등을 감안할 때 협약 제40조 제2항 (b)(v) 유보는 무의미하며 특히 한국정부가 자유권 규약 제14조 5항(모든 사람에게 형사범죄에 대한 상고권 보장)에 대한 유보를 2007년 4월에 철회한 상황이므로 아동권리협약의 같은 조항에 대해서도 유보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B. 당사국의 협약 이행의무 (제4조)

1. 입법적인 조치

<권고사항 10~11>

- 1) 협약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
- 5. 정부는 협약이행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작업을 꾸준히 수행해 왔으며, 제3,4차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신규로 제정된 주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빈곤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2 011. 7),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201

- 2. 1), 동아시아 최초로 난민 인정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난민법」(2012. 2), 가정 내 아동학대문제에 사법적인 개입절차를 담아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선행교육 규제로 인하여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혼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수준을 유지 및 보장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도입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 등이 있다. 기존의 법들도 여러 차례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표 I-2> 참조).
- 6. 「대한민국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법원 판결에서 협약이 원용되는 현황은 미약하다. 협약의 전반적 조항을 이행하는 국내법규 보완과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용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5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를수행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2) 청소년 미혼모 지원 법률
- 7. 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일부를 개정(2011. 4. 12), 제17조의2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조항을 신설하였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교 교육비 또는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014. 1. 21)을 통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청소년 한부모가 전학 없이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 후 원적학교에서 학력수료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므로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로 신설되었고(2014. 1. 21),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요청을 하는 경우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우선 입소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항이「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제①항에 마련되어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지원을 보완하였다.
 - 3)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률

8.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형법」제269조 및 제270조는 낙태금지와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모자보건법」제14조 제①에는 인공임신중절 허용의 한계로서 강간이나 준강간 등에 의하여 임신을 한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모자보건법」동 조항에 근거하여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대부분의 혼전임신 청소년은 합법적 낙태가 가능한 임신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라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여 음성적인 낙태로 생명의 위험에 처하거나 태아 유기, 입양 강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기준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 임신의 경우를 포함시키고 안전한 낙태와 낙태 후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여성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결정권 논의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 정책의 조정

<권고사항 12~13>

-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
- 9. 종합적인 아동정책 수립과 관계부처 의견 조정 및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평가 등 아동정책조정 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2013년 5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0명의 당연직 관계 장관 및 1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하였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아동정책실무위원회도 2014년 2월 민간위원을 재위촉 하였으며, 2015년 12월에는 아동복지, 인권, 건강 등 분야별 민간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2014년 2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을, 2015년 5월에는 정부가 수립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년~2019년)'을 심의하였고, 2016년에는 2014년 2월에 수립한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재심의하고 확정하였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 예산 및 조직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 위원회의 정례적 개최, 전문성 확보, 상시의제 발굴 등 아동권리협약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설 사무국 설치 또는 아동정책실무위원회에 법정 상근 전문연구원을 두는 방안 등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고자 한다.

- 2) 아동권리 관련 부처 간 연계 강화
- 10. 아동정책은 아동의 삶과 관련된 모든 정책영역과 관련되므로 부처간 연계·조정이 중요하다. 국정 아젠다로 채택한 특정 이슈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위원회나 부총리 주재의 사회관계장관회의, 주무부처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또는 조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 관련 부처 간 연계강화를 위하여 2014년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2016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였다.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범정부적인 '학생자살방지종합대책'을 확정하고(2015.3) '아동권리헌장' 제정안을 심의하기도(2016.5) 하였다.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설치되고 5개년 단위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심의하고 확정(2016.4)하였다.
- 11.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5월 「청소년기본법」을 일부 개정하여 '청소년 관계기관협의회'를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15년 12월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15년 12월에 14개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연 2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위원회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년~2017년)'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하였고, 동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추진계획 등을 심의하고 확정하였다. 또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년~2018년)'을 심의하였다. 동 위원회는 향후 시의성 있는 청소년정책 현안을 발굴 및 조정하고 민관 협업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3. 국가행동계획

<권고사항 14~15>

12. 정부는 2012년 8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5년마다 아동정 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광범위한 연구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년~2019년)'은 2015년 5월

채택되고 공표되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거로 아동 최우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아동이 처한 현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모든 영역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5개 영역, 158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후 그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환류하고 있다.

- 13. 정부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현재 5대 영역, 75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년~2017년)'을 이행 중에 있으며,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2018년~2022년)'을 수립하고 있다. 2016년 4월 청소년정책에 대한 분석·평 가를 위한 추진계획이 심의·확정되어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시범 분석이 이루어졌다. 청소년정책 관련 사업의 종합적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자한다.
- 14.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9월, 모든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특히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년~2021년)'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아동·청소년 분야의 국가정책 방향을 생애발달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인권보호체계 수립, 관련법과 정책의 점검 및 개선으로 정하였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인권증 진을 위한 7가지 핵심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정부로 하여금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있다.

4. 독립모니터링

<권고사항 16~17>

15.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인권업무를 전담하는 아동·청소년인권팀 신설과 소위원회 중하나로 아동권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독립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본격적인 모니터링 업무를 시작하게 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학대', '가정 밖 청소년 인권'에 초점을 두고 아동인권 현장 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정책개선 권고를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권리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기초현황조사'를 통해 협약

조항별 국내의 제도와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2016년에는 인권현장 정책모니터링 및 실태조사와함께 아동청소년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여 아동·청소년의 모니터링참여 기회를 마련하였다. 2017년에는 아동·청소년인권팀을 아동·청소년인권과로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전담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16. 유엔이동권리위원회 및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결과 아동인권을 전문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 운영규칙(2016. 4. 28. 공포 및 시행)에 근거하여 아동권리위원장 및 위원을 지정하였고 월 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독립성, 전문성 및 조사권한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정부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등 독립적인 모니터링 업무를 강화하게 된 것은 큰 진전이라고할 수 있다.

5. 자원할당

<권고사항 18~19>

- 1)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전략적 예산 수립
- 17. 정부는 빈곤으로 인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아동의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을 우선 지원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은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 2011년 131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229개 시군구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 예산은 2011년 372억 원에서 2016년 668억 원으로 79% 증가하였다. 사업의 대상아동 역시 2011년 44,651명에서 2016년말 134,853명으로 확대되었다(<표 I-3> 참조).
- 18. 방과 후 홀로 방치되는 아동에 대한 돌봄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는 2011년 3,260개소에서 2015년도 4,113개소로 확대되었고, 2016년 진입평가를 통하여 정부예산 지원센터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아동은 2011년 105천명에서 2015년 말 110천명이며, 예산은 2011년 963억 원에서 2016년도 1,414억 원으로 설치개소수의 증가와 함께 예산이 46% 증가되었다(<표 I -4> 참조).

- 2) 보육·가족·여성 예산 등
- 19.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가족의 소득에 관계없이 0세~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며, 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아동양육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2011년 39,842개의 보육시설에서 1,348,729명의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받았고, 2015년말 42,517개의 보육시설에서 1,452,813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받았다. 영유아 보육료, 아이돌봄 등에 소요되는 보육·가족·여성 예산은 2011년도 25조109억 원에서 2016년도 57조654억 원으로 약130% 증가하였다(<표 I-5> 참조>). 가족기능강화와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예산은 2014년 683억 원→2015년 597억원→2016년 61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 20. 초등학교에서의 돌봄교실 운영, 방과후 교육 활성화, 학교체육 활성화,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교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2011년 35조786억 원에서 2016년 43조445억 원으로 21% 증가하였다(<표 I-6> 참조). 아동에게 15종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2014년 1천639억 원→2015년 1천943억 원→2016년 2,100억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방접종이 2015년 14종에서 2016년 15종(자경경부암 포함) 이 되어서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이 6.2%(164억 원) 증가한 것이다.
- 21. 정부는 빈곤으로 인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서비스, 홀로 방치되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서비스,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보육서비스,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 등에 국가재정을 많이 투여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예산은 GDP대비 3% 정도에 머물러 있고(<표 I-7> 참조), 전체 아동 및 가족 예산은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3)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의 참여

- 22. 정부는 아동복지사업(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의 효과성과 만족도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예산이 아동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친 영향평가는 아직 계획단계에 있다. 아동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아동영향평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2016. 3. 22. 본조신설, 2019. 3. 23. 시행),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아동영향평가는 2019년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아동정책이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동영향평가의 실시로 아동권리 관점에서 수립된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여부가 확인될 것이며, 결과에 기반한 예산수립이 가능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23. 정부는 매년 아동총회 및 청소년특별회의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회의 이후 정부에 제출하는 결의문 중 예산책정이 필요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 회를 구성,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계되는 정책과 예산에 대해 건의하게 된다.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이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로 포함되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지표에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이 포함되면서 자치단체 예산수립 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동·청소년이 제안한 의제에 예산을 배정하는 참여예산제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자료수집

<권고사항 20~21>

- 1) 국가통계자료 생산의 제도화
- 24. 정부는 「통계법」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근거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향통계', '국제·국내 인구이동', '장래인구·가구 추계', '사망원인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서 생산하고 있다. 2016년에는 '인구주택총조사' 및 '장래인구추계'를 공표하였고, 2017년에는 '장래가구추계' 및 '시·도별 장래인 구추계'를 공표하게 된다. '인구이동 및 인구동향통계'(출생, 사망, 혼인, 이혼)는 매월 작성하고 있으며, '사망원인통계'는 매년 9월에, '다문화인구동태통계'는 매년 11월에 공표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를 통하여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적 배경 등 구분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25. 정부는 2011년 8월 전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매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제1차 아동종합실태조사가 2013년에 실시되어 그 결과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되었다. 이 조사에는 일반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지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2011년 7월 제정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5년 마다 실시되어야 하는 빈곤아동 실태조사도 종합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진행되었다.
- 26. 교육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연구를 목적으로 유·초·중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교, 학생, 교원, 시설현황 등 교육관련 전수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다. 한편 2012년 3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항의 도입으로 교육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와 대책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알리고 지역차원에서 정부, 학교, 가정 및 사회가 함께 학교폭력에 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27.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의식, 태도,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12년에는 '청소년가치관에 대한 국제비교조사'가, 2014년에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2017년에는 청소년가치관조사와 청소년종합실태를 통합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는 '청소년백서'로 정리하여 매년 발간되고 있다.
- 2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09년부터 매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 전반에 대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통계청 승인통계자료로서 공개되고 있다. 2017년부터는 학생대상 조사 외에 취약계층 인권과 다양한 세부 인권주제별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양상을 다년간의 종단조사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조사로 한국아동패널(육아정 책연구소), 한국아동·청소년패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등이 추진되고 있다.

7. 보급, 인식제고, 교육연수

<권고사항 22~23>

- 1) 아동권리교육의 제도화
- 29.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인권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12년 이를 토대로 정부에 대해 인권교육 제도화와 활성화를 포함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였다. 2009년에서 2013년에는 정부의 교육과정 수시 개정 방침에 따라 학생 및 교사로 구성된 '교과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교과서 상의 반인권적인 요소 등을 분석하였고, 2015년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1년~2016년에는 학생인권 관련한 중앙부처와 시·도 교육청 관계자로 '학생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 2017년에는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하여 아동권리교육 제도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 30. 교육부는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 10개 중에 인권교육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인권교육은 교과와 창의적인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며,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2015년 9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 '안전한 생활' 활동시간 (64시간 이상)을 신설하여 초등학교 입학초기 단계부터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도록 교육과 정에 반영하였다. 시·도교육청의 '2016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방향' 연수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연수과정에 아동인권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안내하였다(2015년 11월). '2016년 교(원)장 자격연수 기본 계획'수립 시에도 아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2) 아동관련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활성화
- 3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및 2015년에 영유아 인권교육 교재 및 어린이용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사이버교육컨텐츠를 개발하였고, 2016년에는 아동청소년용 인권교재와 부모용 '아동 인권' 도서를 개발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인권의 이해', '학생인권' 등에 대해 225,634명의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특강을 실시하였다(<표 I-8> 참조).
- 32.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하여 민간인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이해와 실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 영유아 부모대상 및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대상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총 3,536명을 대상으로 113회 실시하였다(<표 I-9> 참조). 2015년도 아동권리 인식도조사 결과 아동관련 직업에 종사자하는 자의 아동권리교육 경험은 65.9%이며, 아동관련 직업의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교육 경험률 22.3%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3.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진로결정권 프로그램(2014), 청소년근로권보호 프로그램(2015년),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용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2016년)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2011년 5월 청소년인권 전담기구인 '청소년희망센터'를 개소하여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권리교육을 실시하며,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2011년 5월에서 2013년까지 청소년지도자 대상의 권역별 순회교육, 찾아가는 권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1,811명, 2012년 3,411명, 2013년 3,51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 34. 법무부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으로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아동발달장애인 수사전문가과정(5일)'을 개편하여 '학대 피해아동의 피해실태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연 1회 총 14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여성아동학대범 죄 수사실무과정(3일)'에서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사례연구' 등의 교과를 연 1회 총 172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학대피해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35. 법무부는 소년보호기관 종사자 대상의 '보호직 인권감수성과정(3일)'을 개설하여 2011년~2016년 7월까지 연 3~8회 총 94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생활지도 실무과정(5일)' 및 '생활지도 주무역량강화과정(3일)'은 2011년~2016년 7월까지 연 1회 총 119명에게 실시하였다. '보호직 신규자 및 전입자 과정(20일~25일)'은 2011년~2015년에 연 1~3회 총 6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법무부는 소년보호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인권전문기를 초청하여 총 92회 2,250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다. 인권국 차원에서는 소년원 및 소년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권정책 리더과정' 등의 교육에 소년보호기관 직원들이 총 227회, 314명이 참여하였다 (<표 I-10> 참조).

- 3) 협약 홍보 강화
- 36. 국가인권위원회는 협약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정부에 대해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에 필요한 정책개선 권고를 언론에 보도하여 정부의 인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였다(<표 I-10> 참조).
- 37 보건복지부는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어른도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반영한 전문과 6개 조항으로 구성된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하여 2016년 5월 2일에 발표하였고, 2016년 7월에는 교육용 이동권리헌장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아동 관련 NGO 등에 인포그래픽 영상을 배부하였으며, 아동안 전사이버교육센터 교육과정인 E-learning에 홍보영상으로 편성하여 교육에 사용하고 있다(<표 I-12> 참조).
- 38.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희망센터와 함께 매년 1~4회 토론회 및 포럼을 개최하여 청소년의 권리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2013년부터 '청소년통계'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일부 결과가 포함되고 '청소년통계'가 통계청 공식 자료로 등재되면서 청소년의 권리인식 등에 대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표 I-13> 참조).

8. 국제협력

<권고사항 24~25>

- 1)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국제협력
- 39. 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였고,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을 수립, 이에 기초하여 제1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1년~2015년)과 2015년 12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년~2020)을 수립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상 2015년도 ODA/GNI(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비율 목표가 0.25%이었으나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2015년도 실적은 0.14%로서 목표에

훨씬 미달하였다. 그러나 최근 5년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총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의 평균 1.2%에 비해 우리나라는 12%(잠정)로서 DA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이루었다.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ODA/GNI 비율이 0.20%에 도달하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

- 40.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한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 구상은 향후 5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통한 무상원조형식으로 개발도상국 소녀들의 교육, 보건,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2억 불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이 구상의 일환으로 2016년 5월부터 2년 6개월간 우간다 동부 및 북부지역 14개지역에서 우간다 여성청소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십대 임신예방 및 사회경제적 역량강화 사업'에 500만 불을 지원하기 위해 우간다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정부는 2015년 3월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전략"을 마련하여 아동·여성·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다. 특히 「난민법」(2012. 2) 제정 이후 난민유입의 증가로 최근 5년간 난민 지원은 2012년 350만 불에서 2016년 5,129만 불로 그 지원 규모가 15배나 확대되었다.
 - 2)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 41. 정부는 한-ASEAN 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바, 대표적으로 아동보육, 특별보호 대상 아동관련 법률 및 사회복지, 아동교육 등에 관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여성·아동 인신매매 방지 관련 워크숍 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다.
- 42. 정부는 2011년 12월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하였고, 국제 원조정책의 패러다임을 '원조 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전환하고 선진국과 신흥국, 민간 등 다양한 공여주체들을 아우르는 새로운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긴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 (부산선언)'을 채택하였으며, 외교부는 부산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매년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개최하고 있다.
- 43. 한편, 한국의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UN DPI(공보국)/NGO회의를 2016년 5월말 경주에서 개최되도록 유엔과 협력하였다. 이 회의에는 유엔관계자, 정부관계자 아시아,

아프리카의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국에서 2,500여명이 참석하여 '세계시민교육-UN지속가능개 발목표 이행을 위한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NGO)이 2014년 한 해동안 해외사업으로 지출한 기금은 총 12,624억 원에 달하였고, 이 기금수준도 2014년도 KOICA를통한 정부의 무상원조기금 약 9,720억 원(약 883.7백만 불×1,100원)을 훨씬 능가하였다. 한국의시민사회단체들은 해외사업 수행 시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적극 부합하도록 최선을다하고 있다.

9. 아동권리와 재계

<권고사항 26~27>

- 44.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1월 아동노동의 금지를 포함하는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배포하였고, 2014년 9월 117개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기업에 대한 인권 관련 비재무정보의 공시제도 등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인권 존중책임 이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과제를 포함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 2016년 9월 정부에 권고하였다. 이 NAP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여 기업의 인권 친화적 활동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업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45.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세미나 또는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노무관리 설명회를 각각 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이 때 아동노동 관련 법령을 비롯한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노무관리 안내서에 해외진출 기업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도록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포럼을 5회 실시하였고, 자유무역협정 및 협약 체결 시에 아동노동 금지의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OB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홍보 및 교육활동 등을 통해 기업의 아동권리 인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 📗 장

아동의 정의

A. 국내법상 아동의 정의 (제1조)

- 1. 현행 아동 관련 법 체계는 그 목적과 정책내용에 따라 다양한 연령기준과 용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동을 정의함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법은 「아동복지법」이다. 이 법률 제3조 1호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와 마찬가지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2.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로 규정되어 있던 결혼 최소연령의 불합리한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2007년 11월 개정된 「민법」에 따라 여자 18세, 남자 18세로 정한 결혼 최소연령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아동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보호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2011년 3월 「민법」을 개정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었는데, 이는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아동의 권리를 확대한 결과이다.
- 3. '아동'과 함께 혼용되고 있는 용어 및 개념은 '청소년'이며, 가장 대표적인 관련법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성인의 반대개념으로 '미성년자'란 용어를 쓰고 있으며 연령기준은 19세 미만이다. 이처럼 아동의 정의와 관련된 연령규정은 그 기준과 범위가 일관성과 통일성 없이 복잡하게 사용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II-1> 참조). 한편 사전적 의미나 사회통념상으로 보면 '아동'은 초등학생 학령기(만 6세~12세까지)를, 중등학교 연령대(13세~18세)는 '청소년'으로 통칭하고 있어 연령 기준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4. 현행 아동 관련법 체계의 다양한 연령기준은 아동의 권리실현에 장애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법의 목적에 따라 정책서비스 제공의 기회가 부여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용어나 연령기준의 통일보다는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관련하여 그들의 능력이나 역량을 객관화하여 적합한 연령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며, 연령과 성숙정도에 따라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하여 사법적, 행정적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아동정책 추진을 위해 연령기준 통일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제 III 장

일반원칙

A. 차별금지 (제2조)

1.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권고사항 28~29번>

- 1.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포괄적인 차별사유에 대한 차별행위를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2007년 법무부는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한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차별금지 사유 등과 관련하여 사회각계 각층의 이견 대립으로 제정되지 못하였다. 이후 법무부는 차별 관련 국내법과 해외 입법례 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안 추진을 검토 중이다.
- 2.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차별금지기본법안에 대하여 차별금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법체계 구축을 위해, 차별금지법안과 같은 일반적·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상 차별사유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2012년 수립된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도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이 포함되었으며, 2013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단을 구성(인권국장, 외부전문가,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 등 총 12명) 운영하여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다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있어 차별금지 사유 및 규정 방식 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이견이 대립하는 등 사회적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제19대 국회(2012.5.30~2016.5.29.)에서도 의원입법으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정되지 못하였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차별문제 전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개별 국내법들과의 법체계적 조화 등을 고려하여 차별금지법의 제정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2.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조치

-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동법 제5조에 따라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4. 동 계획에는 이민배경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등을 정책과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문화가정 학생 10명 이상 학교중심으로 교육지원,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 학교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및 교원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5. 현재 한국 사회는 한자녀 자녀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혼·재혼, 별거,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 등 가족 형태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구는 2005년에 154,333가구였으나, 2014년에 는 266,547가구로 1.5배 증가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가정형태에 대한 존중과 적절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제1차 이동정책 기본계획' 및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 6.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이주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미등록 이주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퇴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국 관리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2013.6.24.).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를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를 유아학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것을 관련부처에 권고하였다(2015.10.7.).
- 7.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의 양육환경 및 발달상태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 및 돌봄지원 아동의 빈곤 및 낙인, 차별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3. 청소년미혼모 교육권 보장 및 가정양육 지원

- 8. 정부는 2011년 4월 「한부모 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한부모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 교육비 지원, 자립촉진수당, 위탁형 교육제도 등 다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강요에 의한 입양을 막기위해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탁형 교육제도를 실시하여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도 운영할 예정이다.
- 9. 정부는 2013년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부당한 징계나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학생 미혼모에 대한 교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재 개발을 추진 중이다.

B.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 (제6조)

1. 아동 자살

<권고사항 30~31>

10. 2013년 '아동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9~17세 아동의 3.6%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해당 항목 응답자의 25.9%가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27.9%가 최근 1년간 '가끔' 또는 '자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14년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으로 고의적 자해(자살)이 7.4명으로 운수사고(4.9명)나 암(2.9명) 등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높다.

- 11.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사업, 중앙자살예방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자살예방관리, 학생정 서·행동 특성검사, 학생정신건강정책 중점 연구소 운영, Wee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12. 정부는 2012년에 자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자살과 학생정신건강 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중앙심리부검센터'와 연계하여 '한국형 심리부검체크리스트 청소년용(Korea-Psychological Autopsy Checklist Adolescent)'을 개발하는 등 과학적 근거 기반을 위한 자살학생 심리부검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이를 토대로 자살학생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심리부검 대상자(유가족, 친구)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하였다.

2. 아동 안전

- 13. 정부는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시 종합 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년 12월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다. 2015년 4월에는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체계적 대응 및 법적 의무사항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인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설치하였다.
- 14. 2014년 한 해 동안 총 215명의 어린이(15세 미만)가 안전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교통사고 (80명), 익사(36명), 추락(31명) 등이다. 정부는 교통사고·익사 등 어린이 사망사고를 예방하여 2020년까지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인 2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6년 4월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15. 정부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 6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016년에는 동법을 개정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등 안전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의 중개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 16. 정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관련시설 주변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주출입문으로 부터 3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행속도 제한, 교통안전·도로안전시설, 노상 주차장설치 금지 등을 강화하고 있다. 보호구역 지정 건수는 2010년에는 13,207곳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15,799곳으로 19.6% 증가하였다.
- 17. 정부는 2014년 11월, 학교교육을 통해 생명존중·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시설과 활동 시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2015년에는 유·초·중·고 발달단계별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7대 영역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인터넷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 12월에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기본계획(2016~2018)'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3. 학교 밖 청소년지원

- 18. 정부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14년 5월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2015년 5월,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수립하였다. 전국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는 2016년 기준 20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19.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생계비, 치료비, 검정고시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거리상담, 사이버 상담을 통해 가출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긴급구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 또래상담과 보호시설을 통해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의 위기 지원과 재유입 예방활동 등을 하고 있다.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국립중앙청

소년디딤센터'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C.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제3조)

<권고사항 32~33>

- 20. 정부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의 관점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수립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과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과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2016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영향평가 제도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 21. 법무부는 수사단계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전국 16곳에 '청소년비행예방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소년원 출원생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출원생 사회정착 지원센터'를 신설하였다. 또한 검사가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변호사로서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법률지원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22.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등)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청소년이 주도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내 참여분야를 통해 청소년이 직접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23.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을 위한 아동전문치료기관 입원 또는 요양소 입소, 입양 시 해당 보호대상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정책·제도 수립 및 사업 시행에 있어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4.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만들기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 획'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친화적인 가치를 정책수행의 핵심원리로 채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D. 아동의 의견존중 (제12조)

<권고사항 34~35>

2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과 관련한 일에 있어서 의견을 존중받고, 교육, 복지, 청소년활동, 소년사법 등 다양한 부문에서 아동의 참여 기회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정비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 학교에서의 아동의 의견존중

- 26.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 나아가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7. 정부는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학생, 보호자, 교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3년에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발간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는 등 학교규칙에 있어서 학생을 포함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존중 및 학생자치활동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28. 현재 학교에서 학교운영과 학생생활의 내용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구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학생이 참여하여 자신들과 관련한 일에 있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학생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선정 및

교내 CCTV 설치 등 학교생활 관련 주요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참여기회 보장

- 29. 정부는 2004년부터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매년 개최하여 아동들 스스로 의결한 아동권리 분야 결의문을 해당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6년에는 2008년에 개최된 제1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결의된 안전과 관련한 내용이 입법화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아동의 제안내용을 토대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2항에는 학교시설 안전 점검 시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전문가가 참여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 30. 정부는 2012년에 청소년의 의견표명권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의 자기의사 표명 및 결정권,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
- 31. 정부는 2004년부터 청소년들이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는 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의견을 말할 수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998년부터, 지역 청소년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참여기구가 청소년의 권리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점검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청소년특별회의'에서 411건의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그 중 88.6%인 364건의 정책과제가 정부 청소년정책에 수용되었다.

3. 사법영역에서의 아동의 의견존중

32. 정부는 아동이 관련된 사건에서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도록 사건처리 절차 및 규정을 개선하고 있다. 2014년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징계대상 행위 조사 시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실무상 처우심사위원회 회의 시 진술기회 부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33. 정부는 입양허가 재판 시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성년후 견인 선임 시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부부에 대한 상담, 캠프,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 34. 현재 정부는 모든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할 경우 법원은 의무적으로 미성년자의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의 신설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를 조력하기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을 위한 가사소송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4. 아동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한 교육

- 35.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아동복지 및 청소년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연수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에 아동권리 및 부모교육을 위한 사이버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지도사 관련 자격연수 시 '청소년인권'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 36. 2016년 5월에는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어른도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하였다. 2017년에는 아동권리헌장의 내용을 담은 아동권리 부모교육 교재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권리교육을 아동안전 사고예방, 아동학 대예방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37. 법무부는 아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무·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수사 및 아동에 대한 보호·선도가 필요한 사안 등에서 아동의 청문권 보장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년보호기관 등의 근무자에 대한 아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구체적인 성과는 I 장 35문단 법무부의 인권교육 실적 참고). 향후 인권교육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노력을 통해 인권교육 횟수 및 인권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인권감수성 훈련 교재 및 소년보호 인권실무교재 개정 시 아동권리협약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5. 아동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에 관한 영향평가

- 38. 정부는 2016년 3월 「아동복지법」 제11조의 2를 신설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관련 정책에 수립·반영할 목적으로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이 관련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39. 정부는 매년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와 5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이동의 의견이 고려되는 정도와 아동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는 아동 삶의 환경변화와 인권실현 정도를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15년에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를 실시하여 청소년 참여 활동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참여활동이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바라는 정책제안이 반영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_제 IV _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

A. 국적취득 및 출생신고 (제7조, 제8조)

<권고사항 36~37>

- 1. 대한민국은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국적 취득은 부모양계 혈통주의와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para. 147). 따라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으로서 국내 출생한 자녀는 그 부 또는 모의 본국 법에 따라 출생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 또는 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도 본국 법에 따라 출생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자국 공관에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난민,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병원 등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외국인 등록이 가능하다.
- 2. 정부는 2016년 5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출생신고 의무자가 기간 내에 출생신고 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출생신고제로는 고의로 출생등록을 하지 않아 공적 시스템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의 발굴이 불가능하다.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에서 전산망을 이용하여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B.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제14조)

<권고사항 38~39>

3. 「대한민국헌법」은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사립학교를 포함한

초·중등학교에서 학생에게 특정 종교나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과목을 편성할 때에는 대체과목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2015.09.23.)'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가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다.

- 4. 2016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종교재단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종교행사의 자율적 참여와 관련해서는 '그렇다'(매우 그렇다 12.0%, 그런 편이다 14.7%)에 응답한 비율은 26.7%,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51.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1.6%)에 응답한 비율은 73.1%로 파악되었다(<표 IV-1> 참조).
- 5. 정부는 종교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특정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학생에게는 대체식품 또는 다른 음식의 양을 추가하여 주는 등 개별관리 및 영양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영양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식단정보를 사전에 가정통신문 등으로 가정에 알려 학생과 학부모가 급식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C. 표현·결사·집회의 자유 (제13조, 제15조)

<권고사항 40~41>

- 6. 아동의 표현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권리는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그런 편이다 52%, 매우그렇다 26.1%)에 응답한 비율은 78.1%,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4.9%,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에 응답한 비율은 21.9%로 파악되었다(<표 IV-2> 참조).
- 7. 현행 초·중학교 교육과정에는 '사회'와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치와 법' 과목에 자유권 내용을 포함하여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8.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 교사, 보호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칙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법령을 벗어난 학생들의 정치참여 등 자유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원칙적으로 둘 수 없다. 교육부는 학생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는 학교규칙을 모니터하여 학생들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학교장 및 교사의 허가사항으로 두는 등 학생의 정치 및 사회참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을 모니터하여 아동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9. 학생자치활동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권장 및 보호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학교규칙 운영매뉴 얼'을 발간하여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아동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역량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0.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모든 학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학교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지역사회 대표가 참여한다. 학생참여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운영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D.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 (제16조)

11.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대한민국헌법」과 아동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안전을 위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나 일괄검사를 할 수 없으며, 일기장 등 사적 기록물을 함부로 열람하거나 취급할 수 없다. 또한 개인의 성적이나 징계 사실,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 관련 학생 정보 등은 게시판 등에 게재할 수 없다(<표 IV-3>, <표 IV-4> 참조).

- 12. 아동의 개인정보는 2011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 및 공개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013년에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학교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정당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를 배포하여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13. 아동은 자신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의 학교에서는 조례에 따라 CCTV 설치 및 장소 등과 관련하여 학생을 포함한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어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E. 정보접근 (제17조)

- 14. 정부는 2015년에 수립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에 대한 아동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쓴 아동용 아동정책기본계획 3종(초등학교 저학년용, 초등학교 고학년용, 중고생용)을 제작・배포하였다. 아동용 기본계획은 아동들에게 자신들을 위한 국가 계획이 수립되었음을 알리고, 정책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15. 정부는 2014년에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는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강화, 장애인도서관 기준 확립 및 법·제도 정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확대 및 활성화, 학교도서관 서비스 확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및 직무교육 훈련 확대 등이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있다.
- 16. 학교도서관은 2008년에는 전체 학교 중 92.6%가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표 IV-5> 참조). 또한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012년에는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확대·설립하였다.
- 17. 정부는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정보접근 및 활용을 위하여 교육

등을 통한 사전예방과 유해매체 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요청 등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표 IV-7> 참조).

제 V _장 아동에 대한 폭력

A. 체벌 (제39조)

1. 체벌관계법령 제·개정

<권고사항 41>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 1. 정부는 학교단위에서 체벌을 금지할 수 있도록 2011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8항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지도 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체벌 이외에 학생의 훈육 및 훈계방법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해 훈육과 훈계의 허용이 체벌로 오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정부는 체벌 이외의 훈육방법이 간접체 벌이 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자체계획과 단위학교 여건에 따라 대안적 훈육방법의 시행여부와 운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 2. 정부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신고의무가 강화되고,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한 제한근거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시 경찰 동행출동 근거도

마련되었다. 또한 부모에 대한 올바른 양육교육 지원과 아동학대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금지, 피해아동 취학 원활화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하여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례법의 제정으로 체벌이 아동학대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 변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

- 3) 가정과 보육시설에서의 체벌금지 관련규정
- 3. 정부는 가정과 보육시설에서도 체벌을 금지할 수 있도록 2015년에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관련규정을 신설하였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 등의 책무에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제5조제2항),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보육교직원이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서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제18조의2).

2. 체벌에 대한 태도변화를 위한 대중교육 캠페인 실시

<권고사항 42, 46>

- 1) 학부모 대상 체벌 및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시
- 4.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2016년 '아동학대 방지대책' 및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였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체벌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을 위해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015년 부모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약 18만 명, 학부모지원센터의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으로 약 58만 명이 참여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6a). 교육부는 매년 학기 초마다 학부모상담주간을 운영하여 아동학대 내용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2016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올바른 자녀양육 방법 등에 대한 리플릿(10,000부)을 배포하였다.
 - 2) 학부모 대상 온 오프라인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5. 정부 각 부처는 올바른 부모교육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학부모 On누리 홈페이지(www.parents.go.kr)를 통해 부모와함께하는 밥상머리교육 등 16개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 학부모역량개발 자녀교육서 6종(예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교육)을 개발·보급하고, 2014년에 학부모 교육자료 가이드북 6종(유치부/초등1~3/초등4~6/중학교/고등학교/특수교육)도 개발·보급하였다. 정부는 집합교육이 어려운 부모를 위해서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버지교육, 가족갈등관리 등 총 5종의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예비부모인 대학생을 위한 부모교육도 추진할계획으로, 2016년 2학기 부모교육 관련하여 교양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대학 76개교 173강좌 15,133명이고, 전문대학 36개교 84강좌 9,937명이다.

- 3) 체벌 및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실시
- 6. 정부는 체벌에 대한 태도변화가 아동학대라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매년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 및 아동학대 예방주간, 어린이 주간 등 아동행사기간을 이용하여 전국단위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아동복지법」 제23조에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그로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규정하였으며,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도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제4조의7을 신설하였다.
 - 4) 체벌관련 공익광고 송출
- 7. 정부는 2011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을 통해「아동복지법」 제24조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송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적 근거에 따라 SNS,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과 학대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EBS 평등채널e를 통해 아동학대를 포함한 폭력 예방 영상을 방영하고, KBS를 비롯한 지상과 방송에 2016년 상반기 총 749회 폭력예방 동영상을 송출하였다.

3. 대안적 훈육방법 장려

<권고사항 43>

- 8. 정부는 학교 체벌을 금지하고, 이를 대체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훈육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각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기본계획과 대체프로그램으로 '학생자치법정'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1)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추진
- 9.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부터 체벌금지방침의 후속대책으로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국민일보, 2010.10.4.). 기본계획에는 서울시내 학교에서 도구와 손발을 이용한 체벌 및 얼차려 등 모든 형태의 체벌이 금지되고, 체벌대체 프로그램으로 교실안 지도, 교실밖 지도, 생활평점제, 학생자치법정, 봉사활동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서울시교육청, 2010). 체벌 관련 교원의 대응방안 강화에 따라 교원이 징계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표 V-1> 참조).
 - 2) '학생자치법정' 운영
- 10. 정부는 학교교칙 행사에 있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해석 차이로 인한 갈등과 학교교칙위반학생에 대한 교사별 처벌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자치법정을 도입하였다.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스스로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무를 맡고 교내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실제 법정처럼 선도하는 제도이다. 2006년 독일의 학생자치법정을 모델로 시범 운영되다가 2011년 이후 교사의 학생지도방식의 한계점 보완을 위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4. 학생체벌사례 신고제도 마련

<권고사항 43>

11. 학생체벌사례가 발생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체벌사례가 폭행인 경우「형법」,「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된다. 체벌이 발생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도 있고, 국가인권위 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할 수도 있다. 그밖에도 시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해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12. 시·도교육청에서는 체벌규정 폐지 이후 교내에서 체벌이 발생하면 교감이 상황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상습적 체벌교사는 학교장이 구두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방학기간 동안 분노관리, 대회방법 상담 프로그램을 자비로 연수하도록 하고 있다. 폭행 등 심각한 체벌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에 곧바로 신고해 특별장학이나 감사를 실시한다(서울 시교육청, 2010).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징계 받은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건수는 총 2,222건으로 이 중 학생체벌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결정된 건수는 24건에 이른다.

B. 아동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제19조, 제24조3항, 제39조)

1.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법적의무 강화 및 신고자 보호조치 확대

<권고사항 44>

- 1) 아동학대 신고자 확대 및 법적 의무 강화
- 13. 정부는 2011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으로 신고의무와 신변보장을 강화하였고,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사항을 규정하였다. 2016년 5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육이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 직군 등 신고의무자 직군을 추가하였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도 2013년 3,706건에서 2015년 4,900건으로 증가하였다.
- 1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로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사례는 2013년에 한

전도 없었으나, 2014년 10건, 2015년 21건에 이르렀다.

- 2)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 15. 아동학대 신고자 등1)의 안전을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0조의2). 2016년 1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를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이를 신고하거나 고소·고발 등의 행위를 공익신고의 대상에 포함하였다(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51).
- 16. 2016년 5월에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제10조 제3항, 제62조 제2항). 또한 아동학대 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제35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신문 편집인·발행인 등은 아동보호사건과 관련된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신거나 방송매체를 방송할 수 없는 비밀엄수 의무를 진다(제35조 제2항, 제62조 제3항). 아동학대 신고자 등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의 보호조 치를 받을 수 있다(제10조의3).

2.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관련인프라 확대

<권고사항 45>

- 1)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 17. 정부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 및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방에 이양되었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국고지원으로 전환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신규 사업도 확대 운영하였다. 그 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4년 50개소에서 2015년 55개소로 늘어났으며, 2016년 말까지 6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1) &#}x27;아동학대 신고자 등'이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제2조 제4의2호, 제4의3호)를 말한다.

- 18. 학대피해아동쉼터도 2014년 36개소에서 2015년 40개소로 확충되었고, 2016년 말까지 5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증설로 2015년에는 총 40개의 쉼터에서 830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중 648명(78.1%)은 2015년에 퇴소하였으나, 182명(21.9%)은 2016년에도 재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그러나 2015년에 학대로 인해 분리보호조치 된 피해아 동 3,110명 중 쉼터를 이용한 아동은 21.3%(661명)에 불과하여, 앞으로 더 많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 2) 아동보호관련 전문인력 확대
- 19. 정부는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을 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있다. 2015년 아동학대예방사업 예산 확대로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근직 임상심리 전문인력을 1~2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심리지원 인력은 2014년 190명에서 2015년 315명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 5월부터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개소 당 15명에서 17명으로 증원하고 3개소 추가개소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확보하였다.
- 20.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근직 전문인력을 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례 치료를 위해 1인의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사례수가 매우 많은 편이다. 2014년 한 해 동안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1인당 총 245.4회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아동학대 사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1인당 업무량은 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업무 포화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기관 내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3) 상담서비스 개편
- 21. 정부는 2014년부터 112 신고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와 상담뿐만 아니라 즉시 수사나 긴급개입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여론조성 및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 이후 체벌 및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교육, 학대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및 캠페인의 효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그 결과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가 2011년에 8,325건이었던 것이 2015년에 16,651건으로,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11년 6,058건에서 2015년 11,71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3.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체계 확립

<권고사항 44>

- 1) 아동학대 현장출동체계 마련
- 22.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이전에는 상담원이 학대행위자에게 위협을 받을 때나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만 경찰동행 요청을 할 수 있었다. 정부는 2014년부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호현장 출동체계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사건 조사 및 대응 필요시 관계기관이 협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다. 경찰 동행출동은 2013년에는 552건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4,233건, 2015년에는 10,13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2)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지원 연계
- 23.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발생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원가정보호, 격리보호(친인척 보호, 연고자보호, 가정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가정복귀로 분류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는 '원가정 보호'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다음으로 '장기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에 원가정이 아닌 시설 등에 격리되었다가 회복 후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가정복귀 사례가 증가하였다(<표 V-2> 참조).
 - 3) 아동학대에 대한 효과적 기소방안 마련
- 24. 법무부는 2014년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엄정대처를 위해 죄질이 불량한 경우 1회 범행도 적극적으로 신병을 검토하며, 원칙적 구공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필요적 병과 구형 등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다. 2016년에는 아동학대 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범죄유형에 따라 필요적 구속 기준 등 아동학대사범에 대하여 대응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대구지검 및 광주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영장청구, 형사처분, 피해자지원 등 전과정 책임수사를 하기 위해 전국 모든 검찰청에 여성·아동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아동학대범죄 대응전담검사 책임수사

제'를 실시하고 있다. 책임수사제를 통해 아동학대범죄 대응을 위한 전문적 수사체계가 구축되어가고 있다.

- 4) 아동학대 가해자 조치 및 처벌
- 25.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로서 상담 및 지속관찰, 고소·고발, 입원치료, 타기관 의뢰 등을 하고 있다. 반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이후 아동학대자의 사법처리 비율이 급증하였다.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내사종결되거나 수사진행중인 경찰수사 사례는 2013년에 비해 법 시행후인 2014년에 소폭 줄어든 반면, 법 시행 이후 고소·고발사례가 4분기에 집중되면서 검찰에서수사진행중, 불기소, 아동보호송치, 형사기소되는 사례는 2014년에 급증되었다(<표 V-3> 참조).

4.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철폐를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 개발

<권고사항 47~48>

- 1) 관계부처 합동대책 수립
- 26.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아동학대 등의 및 방임과 관련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짓고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2013년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2014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 등을 차례로 발표하면서, 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국가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실시하고 있다.
 - 2) 관련법 제·개정을 통한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개입 강화
- 27. 2013년 10월 울산초등생 학대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2014년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가해자의 형량 강화,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피해아동 분리보호 강화, 범죄자 취업제한을

하였다. 특례법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 수립
- 28. 정부는 2014년 2월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조기발견, 신속대응, 보호지원, 인식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하였고, 2014년 9월에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을 제정하였다.
 - 4)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개편
- 29.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정, 사후관리 등) 외에도 경찰청의 112, 안전신고센터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의료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사례관리기록, 증거 자료 축적, 체계적 정보연계 및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개편하였다. 정부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담당자, 경찰 등이 학대아동 및 학대행위자 관리, 사례관리, 사업관리, 통계관리, 업무관리, 사이트관리 등을 하고 있다.

5. 아동폭력 관련 국제기구 및 NGO와 협력

<권고사항 49>

30. 정부는 아동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UNICEF, UNESCO, ILO 등을 포함한 국제기구 및 유엔 인권이사 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제68차 및 제70차 UN총회에서 아동 괴롭힘 및 폭력방지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 VI _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A. 아동의 성장하는 능력에 맞는 가족환경과 부모의 지도 (제5조)

일·가정양립 지원

1. 일하는 여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를 확대하였다. 휴직기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06년, '08년, '10년, '14년),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제도개편을 단행('07년, '11년)하는 등 일·가정 양립정책을 시행 하였다. 2014년에는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2016년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58.3%로 2014년 41.2% 대비 17.1%p 상승하였으며(일·가정양립 실태조사, 2016),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2016년 7,616명으로 전년 대비 56.3%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취약계층가정 지원

- 2.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저생계비 180%이하의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한다.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한부모 가구의 경우는 아동 1인당 월 15만 원의 양육비 외에 본인 검정고시 학습비(1인당 154만 원 금액 한도 내에서 수강비 및 교재구입비 등) 지원이 이루어진다.
- B. 부모의 공동책임, 부모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 (제18조)

- 3.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2012년부터 전계층으로 확대하여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미이용 부모에 대하여는 영유아의 연령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일하는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취업부모의 양육지원 확대, 육아휴직제도의 확대,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4. 아동 보호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국가적 책무의 일환으로 육아정보, 돌봄서비스,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기관 및 시설을 운영하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2016년 현재, 전국 93개소 설치)는 영유아 양육 정보제공, 부모교육, 양육 관련 도서 및 장난감 대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평생 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올바른 이해와 역량제고를 위해 학부모 고충상담, 학부모 교육, 학부모회 활성화, 학부모 리더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C. 부모로부터의 분리 (제9조)

5. 1, 2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낮추었다. 또한 2015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 2개소를 설치하여 이혼가정 자녀의 면접교섭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접교섭센터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나 자녀의 탈취 위험이 있어서 면접교섭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센터 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면접교섭권의 강제적 이행을 위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상대방에게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신고를 통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고사항 48c>

6. 또한 가정해체나 빈곤 등의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이 대안양육체제에서 성장하는 동안 아동의

원만한 친가정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안돌봄시설에서 아동의 원가족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가정에 대한 지원과 친권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통해 친가정 복귀를 돕고 있다. 이 외 아동복지시설 치료재활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보호아동의 원가족 복귀를 위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가족캠프, 부모교육 등)을 2012년 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평가 시 시설보호아동과 부모 등 원가족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2013년부터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있다(<표 IV-1> 참조).

7. 법 개정을 통해 친권이나 양육권 결정과정에서 자녀 의견제시의 연령을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낮추었지만,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나 과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실제 이혼조정과정에서 아동의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2015년 개소한 면접교섭센터는 아직 그 성과를 살펴보기엔 이르며, 대안돌봄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친가정 복귀에는 어려움이 상존한다. 면접교섭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특별한 강제력이 없다는 점으로, 소송 중에는 양육권 및 재산분할 때문에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라는 판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만 소송 후에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아동의 의견청취와 면접교섭권 등이 활발히 작동되고,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친가족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D. 가족의 재결합 (제10조)

강제퇴거 집행유예

8. 협약 제10조에 의하면, 아동과 부모는 서로 간의 면접을 위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에 따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유지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12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강제퇴거 시 아동보호를 고려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단속·보호·강제퇴거 시 아동처우에 관한 부분을 「출입국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추가하고, 미등록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그 자녀가 학령기 자녀일 경우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해당 학년의 수업이 종료될 때까지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 아동에 대한 학습권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9. 한편, 2012년 10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불법체류학생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통보의무를 면제하여 불법체류 아동의 학습권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양육해야 할 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귀화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성년 아동은 부 또는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하여 특별귀화가 가능하도록 가족 재결합 장치를 두고 있다.

E. 아동 양육비 확보 (제27조 4항)

양육비 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10.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는 부모 중 한 쪽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선고할 수 있고, 명령위반 시 과태료 처분 및 3회 이상 불이행 시 감치에 처할 수 있는 등 구속력을 강화하였다. 2009년 11월부터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과 담보제공명령(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제공을 명함)을 도입하여 양육비에 관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통해 2017년 6월부터는 자녀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현재 3개월 이상 미지급한 경우에 한해 해당 부모를 감치할 수 있던 것에서 30일 이상 미지급 시 감치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1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원활한 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2014년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에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설치하여 양육비 관련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소송지원, 양육비 채권의 추심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양육비 미확보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

원을 최대 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긴급지원에 소요된 비용은 향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F.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제20조)

가정위탁보호제도

- 12.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이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20조에 따라 가정 내에서 아동의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이 아동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될 때,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시설양육을 지양하고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라는 1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2003년부터 가정위탁보호제도가 본격화되었으며, 2005년부터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이 확대되었다. 2008년 이후 요보호아동 발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9,284명에서 2016년 4,137명으로 두 배 이상 줄었다(<표 VI-2>, <표 VI-3> 참조).
- 13. 가정위탁과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양육비는 원래 따로 양육비를 계상하여 표준화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예산 및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임의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아동을 수급자로 인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 외 상해보험, 의료비 및 치료비가 지원되며, 아동양육 시설의 아동 역시 동일하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시설 및 그룹홈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퇴소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며, 시설 입소 단계부터 아동발달 단계에 따른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권고사항 48a>

14. 대안양육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아동권리교육 실시 여부를 평가하라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아동복지법」 제55조)과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장의 의무(「아동복지법」 제57조) 등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하여 2013년부터 시설장 대상 아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복지시설 평가항목에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시설장의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등 아동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 5~6월에는 아동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아동학대예방 사이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시설 종사자 교육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15.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동을 가정위탁제도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보호아동이 발생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 최우선의 원칙이 아닌 보호시설 여건에 따라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가정 배치가 우선되어야 하나 현재 가정위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예산도 열악한 상황이다. 정부는 배치할 일반 위탁가정이 없어 그룹홈이나 시설 등에 배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위탁가정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G. 보호 및 양육 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 (제25조)

<권고사항 48b>

- 16. 아동 심신의 관리, 보호, 치료를 목적으로 국가가 제공한 양육지정조치와 관련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협약 제25조에 따라「아동복지법」에 준거하여 아동시설에 대한 사정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정기적 심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12월 권고에서 시설운영위원회에 아동의 실질적 참여보장, 잔혹하고 굴욕적인 훈육방식 지양,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시행, 장애아동 및 아동의 정신건강 관련 적정 조치 실시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 진정접수, 조사 및 기소제도를 보장하고, 학대피해자들이 진정절차, 상담, 진료 및 필요한 다른 회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7. 아동시설의 양육 및 생활환경에 대한 사정과 관련하여 2012년 8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아동 개인 생활공간이 침실의 경우 1개당 아동 3명 이하가 되어야 하며, 공동생활 공간이 거실의 경우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평가가 개발된 평가지표에 따라 2013년부터 3년 주기로 자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시각 해소,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아동의 권익향상 등을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18.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및 배치 심의와 관련하여「아동복지법」제12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1항에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저조한 상황이다(<표 IV-4> 참조).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요보호아동 발생후 보호절차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4년「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소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보호조치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아동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간담회 혹은 자문회의를 통해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H. 입양 (제21조)

입양특례법 제정을 통한 입양숙려제 및 입양정보 공개제도 도입

<권고사항 49a>

- 19. 2011년 8월 4일 기존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1년 후인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2013년 5월 24일 네덜란드에서 헤이그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서명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협약비준을 위한 제도정비 차원에서 입양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되었다(<표 VI-5>, <표 VI-6> 참조).
- 20. 입양숙려제를 도입하여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때부터 입양동의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어 아동이 친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를 보장하고, 친부모가 영아의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출생 후 1주일간의 입양숙려기간을 두었다. 이는 출산 전 혹은 출산 직후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직접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이를 계기로 입양아동 발생유형 중 미혼모아동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VI-7> 참조).

21. 입양정보 공개제도에 따라 입양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입양아 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권자가 되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으나, 입양당시 친생부모의 연령, 입양사유 및 거주 지역은 필수공개 정보로 정하고 있다.

중앙입양원 설치 운영

<권고사항 50a, 50d>

22. 2012년 8월 중앙입양원을 설치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를 활성화하고 있다. 중앙입양원이 헤이그협약 6조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권한을 규정하고,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하라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입양특례법」 제26조(중앙입양원의 설립)와 제28조(비용보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중앙입양원은 입양아동의 가족정보 및 친 가족을 찾기 위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국내외 입양 종합상담, 불법입양모니터링, 헤이그협약 비준 준비 및 국제입양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권고사항 49d>

23. 특히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언어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입양 이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권고에 따라 해외입양 아동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외국어 소통가능 인력을 배치하였다. 2013년부터 국외입양인과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팀은 전원 영어소통이 가능하며, 2016년 3월 프랑스 한인입양인을 정직원으로 채용하여 불어권 입양인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015년 덴마크 한인입양인(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어)을 시간제 직원으로 채용하여 관련 국가 한인 입양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고사항 49b, 50b>

24. 입양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적절한 중요성을 부과하며, 아동 최상의 이익 우선의 원칙을 고려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입양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해당아동의 입양동의를 받도록 아동특례법에 명시하였다. 한편 입양아동은 0~3세 영유아가 대다수 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입장에서 입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동 권익보장을 위한 보다 세밀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권고사항 49c, 50c>

- 25.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입양 보내고자 할 때 미혼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실질적으로 강요에 의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에 따라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을 통해 입양허가제를 도입하고 입양동의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과정 중 친생부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동의 철회를 보장하였다.
- 26.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 도입은 해외입양을 포함한 모든 입양이 명확한 임무권한과 사법적 감독 및 규제를 담당할 역량을 지닌 중앙기구의 허가에 따르도록 하라는 권고에 따른 조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5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법안을 마련하여 국제입양절차 전반에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하였다.

<권고사항 49e, 50e>

27. 국제입양 관련 이동보호 및 협약에 관한 헤이그협약(1993년) 비준을 고려하라는 권고에 따라 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지자체, 입양기관의 역할에 대한 체제를 정비하였다.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을 통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 도입 및 양부모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입양절차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2013년 5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에 서명하였다. 2015년 12월 협약 이행법률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정부는 현재 이행입법 준비와 함께 협약비준을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 또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제11조)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

- 28. 최근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함께 이혼으로 해체되는 다문화가족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한국 내 총 이혼건수(115,510건)의 11.2%(12,9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I-8> 참조). 다문화가정의 해체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관련국 가와의 복잡한 국제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양육권이 없는 자가 다른 협약국으로 부당하게 이동시킨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는 한편, 본 협약의 국내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협약 가입을 수락한 국가는 총 29개국이다.
- 29.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아동을 상거소국으로 신속히 돌려보내고, 아동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중국(50.0%), 베트남(27.1%), 필리핀(5.7%) 순으로 정작 결혼이민자 비율이 높은 국가는 협약 미가입국이라는 점에서 아동탈취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협약 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J. 감금된 부모의 자녀와 교도소에서 모와 함께 사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법 및 구금된 부모의 자녀(수용자 자녀) 지원

- 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유아의 양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유아의 양육), 제80조(유아의 인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임산부 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에 의거하여 출산한 여성 수형자가 유아를 교도소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하면 생후 18개월까지 양육하는 것이 가능하다.
- 31.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가족사랑 캠프', '친환경적 접견실'을 통해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 10월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다기관이 참여하여 '위기수용자기족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토대로 여성가족 부와 함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전국 56개 교정기관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사랑 캠프(현재까지 9,144명 참여)(<표 IV-9>참조), 가정상담과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현재 '수용자 위기가족 긴급지원 서비스'를 6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2016년 10월 전면적인 서비스 실시를 할 예정이다.

교도소에서 모와 함께 생활하는 영유아 지원

32. 교도소 내에서 출산해야할 경우 2~3개월간 가석방을 주어서 외부에서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할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다. 2016년 9월 현재 16명의 영유아가 청주여자 교도소 내에서 양육되고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51명의 영유아가 청주 여자 교도소 내에서 양육되었다(<표 IV-10>참조). 생모는 교도작업을 하지 않고 육아거실에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 교도소는 육아를 위해 육아거실의 온도와 조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육아에 필요한 물품을 제하고, 의료처우(영유아 예방접종)를 실시하고 있으며, 월 1회 어머니 교육과 돌잔치를 열어주고 있다.

제 **Ⅶ**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A. 장애아동 (제23조)

<권고사항 51~52>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기관 확충

1.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였다. 법에 의거하여 유치원(만 3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였고, 0~2세와 고등학교 이후 전공과 과정은 모두 무상교육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08년~2012년)을 추진하였고, 현재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년~2017년)을 시행 중에 있다. 이기간 동안 장애아동의 교육여건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을 신·증설하였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는 2011년 155교에서 2016년 170교로 15교가 신설되었고, 특수학급은 2011년 8,415개에서 2016년 10,065개로 신·증설되었다(<표 VII-2> 참조).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발전방안 마련

- 2.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6년간(2011년~2016년) 특수교사는 2,828명이 증원되었다. 또한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자질 함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집합연수 159개 과정에서 17,806명이 이수하였고, 원격연수는 301개 과정에서 88,374명 이수하였다(<표 VII-3>, <표 VII-4> 참조).
- 3. 장애학생을 위한 의무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특수교육 예산을 증액하였다. 특수교육 총예산은 2011년 1,966,284,753천 원에서 2015년 2,227,638,518천 원으로 5년간 261,353,765천 원

증액되었다. 아울러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난 6년간(2011~2016) 2,324명이 증원되었다(<표 VII-5> 참조).

장애아동 통합교육 확대 및 장애인식 개선

- 4. 전체 장애 학생 중 평균 70.4%(2011년~2016년 평균)가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교육부, 2011년~2016년 특수교육 통계). 아울러 통합교육 담당 교사 연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표 VII-6>참조). 특히,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영어과 보조교과서와 장애학생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핵심어휘) 등 다양한 자료를 개발·보급하였다.
- 5. 장애 아동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이해 드라마(KBS 2TV) 및 장애이해교육 라디오 방송(KBS 제3라디오) 프로그램을 지속 제작하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영역별 특성, 에티켓, 교우관계 형성 등을 포함한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B. 생존 및 발달 (제6조)

<권고사항 55~56>

학생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 구축

- 6. 정부는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였고, 법에 따라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였다.
- 7. 정부에서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매 3년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초1, 초4, 중1, 고1이다. 검사결과에 의해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지워하고 있다.

8. 2015년에는 과학적 학생자살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근거기반 접근을 기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생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였다.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구축 확대(17지역),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강화, 범국민적 인식개선, 학생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방문관리사업(2016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 9. 정부는 아동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225개소) 내에 아동전담팀을 구축하여 문제 아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2016년 기준, 아동정신건강 특화 센터는 13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 10.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을 위해서는 국내 최초의 전문 기숙형 치료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를 2012년도에 설치하였다. 정서 행동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 치료, 보호, 자립, 교육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의 일상생활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C. 건강 및 보건서비스 (제24조)

건강보험제도

<권고사항 53~54>

11.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1989년 시작되어 2014년 말 전국민의 97.2%인 5,032만 명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고, 나머지 2.8%인 144만 명이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으로 의료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모자보건사업

<권고사항 57~59>

12. 정부는 '모자보건사업'을 통해서 임신 및 출산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장애발생 예방 및 모유수유율 제고 등을 통하여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성건강을 증진시키며,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청소년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 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국민행복 카드를 2015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건강검진 강화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권고사항 53~54>

- 13. 영유아가 미래의 건강한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후 4~71개월 영유아의 성장시기별로 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이상, 시각이상, 굴절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목표 질환으로 총 10회(건강검진 7회+구강 검진 3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아동의 건강을 위해서 영유아 건강검진율을 제고(현 63.7%)하고 영유아 장애예방 발달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 14. 학생의 경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해서 학교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법」에 의거해서 2016년부터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 15. 한편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6종의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의 검사 비용을 모든 신생아에 게 지원하고 대사이상으로 확진된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특수식이(저단백 식품)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영양보충식품 지원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권고사항 57~59>

16. 영양플러스 사업은 최저생계비 200% 미만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스스로 식생활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며 현재 시행중에 있다.

공공의료를 통한 어린이 의료접근성 확충

<권고사항 53~54>

- 17. 어린이 전문 진료 및 어린이 전문 의료인력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총 5개의 어린이병원이 설치되어 있다. 소아전문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체 계 구축을 위하여 소아전문응급센터가 법제화되었고, 9개의 센터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경증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달빛 어린이병원을 2017년 현재 18개 의료기관에 지정·운영하고 있다.
- 18. 민간 부문에서 공급이 부족한 의료 분야(어린이·노인 등)에 대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관리 (2016년 23개소 지정, 이 중 어린이 전문진료센터 7개소)하며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 D.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복지증진 및 감염병과 비감염성 질환 예방 치료 노력

<권고사항 53~54>

예방접종 강화 및 전염병 감시체계 운영

19. 예방접종은 출생부터 만 12세의 아동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총 16종의 백신이 지원대상이다.

아동청소년 학교체육 활성화

20. 학령기 아동의 체력강화를 위해 초등학교에는 체육전담교사를 연차적으로 배치하였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 하고 있다(평생 즐길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운동 습득). '학생 건강체력 평가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단위 신체활동인 '7560+ 운동'을 활성화 하고 있다(<표 VII-7> 참조).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 도입

21. 정부는 저소득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수급가구 중 만 7세에서 19세 유·청소년들이 스포츠강 좌이용권 지정 시설 이용 시 강좌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E. 청소년의 생식보건과 건강한 생활습관 증진 조치

청소년 대상 성교육 체계화 및 다양화

<권고사항 57~59>

22. 청소년 특성에 맞는 체험형 성교육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전국 58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체험형 교구를 탑재한 버스(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이용하여 농어촌 지역 및 성교육 취약지역 등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다.

23.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예방과 예방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교육,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교육하고 있다. 2011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된 '학교 성 인권 교육'은 2015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2016년 기준,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 인권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5년에 연령 및 학교 급에 따라 유아용, 초등 저학년용, 초등 고학년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등 총 5종의 성 인권 교재가 개발되었다(<표 VII-8> 참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

<권고사항 60~61>

24.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를 2011년 12개소에서 2016년 204개소로 확대되었다. 센터에서는 단체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컨설팅 하며 방문 위생교육을 실시하며, 식단 작성 및 보급,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방문 영양교육 등을 통해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을 아동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설치

<권고사항 57~59>

2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정부는 2010년부터 학교주변에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설정하고 있으며, 저영양·고열량,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규제 등 아동청소년의 기호식품 안전판매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F. 약물남용 보호조치 (제33조)

<권고사항 57~59>

학교단위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26. 여성가족부에서는 1999년부터 2년 주기로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명칭으로 매체이용과 유해환경 실태조사가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초·중등학교에서 음주·흡연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전국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흡연예방교육을 강화함으로서 교원의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연수과정도 운영 중에 있다(<표 WI-9> 참조).

흡연예방 및 흡연학생 대상 금연프로그램 운영

- 27. 담배제조 및 판매에 대한 규제는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담배회사의 광고, 후원, 판촉 금제 및 담배 성분표기 및 흡연경고문구 게재를 의무하고 있다. 또한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담배구매를 막기 위해 담배소매인에게 신분증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제도화 하고 있다.
- 28. 정부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있고, 민간단체를 통한 '금연 상담전화', '온라인 대국민 금연포털(금연길라잡이)'을 운영하고 있다. 흡연여부를 밝히기를 기피하는 청소년들의 금연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연상담전화(1544-9030)'을 운영하고 있다.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29.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단계적 및 체계적 대응을 강화하고,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위험 단계별 상담·치료 연계 등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스마트 폰 중독 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였고, 중독 위험수준별 맞춤형 상담·치유 연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상담 제공 및 스마트폰 조절사용을 위해 또래상담교사 및 또래상담자를 양성하였고, 관련 전문교재를 개발하였으며, 부모교육도 활성화하고 있다.

30.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확산을 홍보하기 위해 '로그out가족in'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관련 기획기사를 제작하였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해소 사업 안내 팸플릿 제작하여 전국 200여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포하였다.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해소 사업 안내 홍보영상물(5분)을 제작하여 인터넷치유캠프, 가족치유캠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입소청소년 대상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사회 중독관리체계 구축

31. 각종 중독의 조기발견 및 치료의 효율화를 위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개소) 및 정신건강증진 센터(209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설 인터넷 치유학교(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 관련기 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G. 사회보장과 아동보호 서비스 및 시설 (제26조, 제18조 3항)

<권고사항 60~61>

아동복지 예산 확충

32. 아동정책분야 총 예산은 '14년 기준 49조 1,377억 원으로 GDP 대비 3.4%를 차지하고 있다. 보육·교육 예산을 제외한 총 아동예산은 약 28조 원으로 GDP 대비 0.2%이다. 이는 OECD 및 노인(2.1%), 장애인(0.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OECD 예산산출방식 기준). 이에 정부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4.5조 원을 투입하여 연평균 8.7%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

무상 보육서비스

33. 정부는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기조 하에 보육인프라와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2013년부터 영유아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을 시행하였다. 보육료 지원아동수는 '06년 68만 명에서 '15년 145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

수혜를 받는 아동은 '10년 5만 명에서 '15년 100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부모의 다양한 양육여건을 고려하여 24시간 보육, 연장보육, 직장보육, 아이돌보미파견,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34. 질병, 병원방문, 자녀 학교방문 등 긴급한 보육수요 발생 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보육 바우처'를 지원하였다. 향후에는 수요가 많은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체 보육 아동의 45% 이상이 공공성 높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에 있다(<표 VII-10> 참조).

일 가정 양립제도 확충

- 35. 정부는 다양한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여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수여하고 있는데, 가족친화인증기업수는 2008년 9개에서 2015년 1.363개로 상당수 증가되었다.
- 36. 전체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도 증가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1년 1,402명(전체 육아휴직자 58,130명의 2.5%)에서 2015년 4,872명(전체 육아휴직자 87,339명의 5.6%)로 2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한편, 1인당 육아휴직급여 평균 수령액은 2006년 40만 원에서 2014년 87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H. 기본적 의식주를 포함. 적절한 생활수준 (제27조 1~3항)

<권고사항 60~61>

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체계 마련 및 학비 지원

37. 빈곤아동 지원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 0~12세 이하 아동 및 기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아동빈곤의 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38. 「초·중등교육법」(2012.3.21) 및 동법 시행령을 신설(2013.2.15)하여 저소득층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원 중이다. 아울러 2014년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기반으로 저소득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 특별지원에는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 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이 포함된다.
- 3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기족지원대상자, 기타 저소득층(통상 중위소득 52~60% 이하) 학생으로 2016년 기준 초·중·고 학생 약 90만 명에게 8,435억 원을 지원하였다.

1. 빈곤아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드림스타트.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40.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0(임산부 포함)~12세 아동 및 가족이고, 주요 사업내용은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사업의 수요자인 아동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 131개소이었던 사업지역이 2015년에는 229개소로 대폭 확충되었다.
- 41. 빈곤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여 방과후 보육 및 교육 욕구를 해소하고 특기적성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 밖 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42.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문화(체험활동, 공연), 정서지원(상담 및 가족지원), 지역사회연계 등 종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1년에 3,985개소이던 센터가 2014년에는 4,059개소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용아동은 10만 명 내외로 취약계층 아동 및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아동이다.

4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2005년 46개소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전국에 25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 44. 청소년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을 완료하였다(2012. 8월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보호 및 지원 활동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 45.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CYS-Net)'를 운영하고 있다. CYS-Net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서 위기청소년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취업, 의료, 보호 등을 서비스를 연계기관에 의뢰하여 전달한다. 2016년에는 CYS-Net을 전국 222개 시도 및 시군구 지역으로 확대하여 약 19만 명의 위기청소년에게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46. 「청소년복지지원법」(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의 거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및 지원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하였다.
- 47. 2012년에는 청소년 상담·복지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2012.2.1.개정, 2012.8.2.시행) 지방자치단체에 CYS-Net 운영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로써 CYS-Net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 186개소에서 2016년 222개소로 약 19.4% 증가하였다(<표 VII-11> 참조).

- 48. 위기 청소년 조기발견 체계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 채널을 다양화하였다.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2011년에 개소하였고,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카카오톡 상담채널을 2014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49. 고위험군 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심리적·정서적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청소년동반자의 전문성 제고와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수석동반자 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5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학교가 중심이 되어 저소득층 가정과 다문화가정 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 학업부진학생 등에게 학습능력 증진, 문화·체험활동 지원, 심리·정서발달 지원, 진로탐색 지원, 복지프로그램 활성화, 교사와 학부모 지원,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0년 기준 총 909개교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제도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디딤씨앗통장)

- 51.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 다딤씨앗통장)'는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 3만 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 52. 대상아동은 아동복지시설 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일부이다. 2015년 9월말 현재 총 74,796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표 VII-12> 참조).

급식지원제도

53. 저소득층 아동의 균형 잡힌 영양공급을 위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미취학 및 초중고 학생 중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학기 중 평일 학교 내 중식은 교육부에서 제공하고, 학교 밖 급식은 석식,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이 제공된다. 학교 내 급식은 영양사를 통해서 질이 보장되고 있고, 학교 밖의 경우는 급식의 영양보장을 위해 '아동급식위원회'를 두고 있고, 산하에 '아동급식지킴이'를 구성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표 VII-13> 참조).

제 **Ⅶ** 장 교육·여가 및 문화

A. 직업 훈련과 지도를 포함한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권고사항 62~63>

직업훈련과 진로지도

- 1. 교육부는 2011년부터 학교에서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가능하도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학교진로 교육프로그램(SCEP)'을 개발하여 학교 내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 2월에 교육부는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정책' 실현을 위한 '2013년도 진로교육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진로교육법」을 제정하였다.
- 2. 2014년 정부는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교육부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전국의 중, 고등학교에 배치하였고, 커리어넷(http://www.career.go.kr, 진로교육포털)을 활용한 진로적성검사 및 진로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학교진로교육프로 그램(SCEP)'을 시범운영함으로서 일반 교과차원에서도 진로와 직업이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진 로와 직업'과목 선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고사항 62, 63d>

교육기회 보장 : 취학률과 진학률

3. 대한민국의 학생 취학률을 2000년도와 2010~2016년 추이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 2000년 26.2%에서 2016년 50.7%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6년 기준, 초등학교 취학률 98.1%, 중학교

취학률 94.9%, 고등학교 취학률 94.1%,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68.5% 수준이다. 2010년 기준, OECD 취학률 국제비교 결과,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동일 연령대 OECD 기준보다 3~4% 더 높은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표 VIII-1> 참조).

4.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은 2000이후부터 계속 상승하여 99.9%에 달하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은 2005년부터 99.7%에 이르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과 대학교에 진학하는 진학률은 2000년 62.0%에서 2016년 69.8%로 증가하였다(<표 VIII-2> 참조).

전체 학교와 교원 수

- 5. 학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전체 수는 2015년보다 106개교 증가하여 전체 20,835개교이다. 구체적으로 유치원은 2015년보다 57개교 증가하여 8,987개교이고, 초등학교는 23개교가 증가한 6,001개교, 중학교는 5개교 증가하여 3,209개교, 고등학교는 9개교가 증가한 2,353개교이다(<표 Ⅷ-3> 참조).
- 6. 전체 교원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16년 전체 교원수는 491,152명으로 2015년에 비해 1,637명(0.3%) 증가하였다. 2016년 학제별 교원 수는 2015년과 비교하여 유치원은 1,925명(3.8%), 고등학교는 428명(0.3%) 증가하였다(<표 Ⅷ4> 참조).

교원 1인당과 학급당 학생수

- 7.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2016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15년과 비교하여 유치원 1.0명, 초등학교 0.3명,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0.3명이 감소하였다. 2000년과 대비하여 유치원 6.2명, 초등학교 14.1명, 중학교 6.8명, 고등학교 7.0명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초등학교의 교원 1인당학생수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표 VIII-5> 참조).
- 8. 학급당 학생수는 계속 감소하여 2016년에는 2015년과 비교하여 초등학교 0.2명, 중학교 1.5명, 고등학교 0.7명이 감소하였다. 2016년 학급당 학생수는 2000년 대비 유치원 6.6명, 초등학교 13.4명, 중학교 10.6명, 고등학교 13.4명이 감소하여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표

Ⅷ-6> 참조).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9. 2012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초·중등교육이 3.7%, 고등교육은 2.3%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초·중등교육이 3.7%, 고등교육이 1.6%로 대한민국은 초·중등 공교육비 비율은 동일하고 고등교육 공교육 비율은 0.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III-7> 참조).

특수학교

10. 특수학교는 꾸준히 학교, 교원, 학급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수학교는 2000년 129개교에서 2016 170개교, 특수학교 교원수는 2000년 4,555명에서 2016년 8,720명, 특수학급 수는 2000년 2,534개에서 2016년 4,611개로 증가하였다. 반면 학급당 학생수는 2000년 9.3명에서 2016년 5.5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표 VIII-8> 참조).

다문화학생 수

11. 다문화 학생은 계속 증가하여 2012년 46,776명에서 2016년 전체 98,868명으로 증가하였다. 초등학생은 2012년 33,740명에서 2016년 73,972명, 중학생은 9,627명에서 2016년 15,080명, 고등학생은 3,409명에서 9,81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초등학생은 약 220%, 중학생은 약 157%, 고등학생은 약 288%가 증가하였다(<표 Ⅷ-9> 참조).

B. 교육의 질과 함께 교육의 목표 (제29조)

<권고사항 62, 63b>

사교육2) 억제

²⁾ 사교육비란 학교 정규교육 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과외, 학원수강, 방문학습지

- 12. 정부는 선행학습의 관행을 근절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2014년 9월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동년 12월에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 13. 2013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6천억 원이며, 2012년 19조 원 대비 2.3% 감소하였다. 2014년 우리나라 초, 중, 고교 학생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2천 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 사교육 참여율은 68.6%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표 VII-10>).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12년 57.6%에서 2.6%p 증가하여 60.2%였으며, EBS 교재구입 학생 비율은 18.8%에서 20.6%로 1.8%p 증가하였다.
- 14. 정부는 학교 수업 및 학생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6조, '16.11.30. 시행) 기 시행중인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는 교습시간 위반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 15.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대학진학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은 성적 이외에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다양한 특성과 경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선발을 하게 된다. 입학사정관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고등교육법 제34조의2, '12.1.26.)하여 학교생활 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대학 입학사정관 확대를 유도하였다.
- 16. 정부는 2011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시행하였는데 이 제도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결과와 인성을 중심으로 각 고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학생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한편,

⁽문제집만 구입하는 비용 제외) 및 유료인터넷 강의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함

일부 교육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고입선발고사를 폐지하여, 내신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낮추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고교입시에서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2019년까지 고입선발 고사를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고입 선발고사는 1998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을 시작으로 폐지되기 시작하여, 2000년 대전, 대구, 2013년 경기, 강원, 2015년 세종, 2016년 충북, 경남, 전남에서 폐지되었다.

- 17.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017년부터 초등학교의 한글교육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국어 교육은 공교육에서 책임지며 유아교육과정에서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통해 무리한 한글교육을 시키지 않을 예정이다.
- 18. 선행학습 관행 근절과 학교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2014년에 「공교육정상화법」을 제정하여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배운 내용에 대하여 출제하고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대학별 고사 출제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유도하였다.

C. 원주민 및 소수인종의 아동권리 (제30조)

<권고사항 62, 63e>

- 19.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법」을 2013년 3월 23일 개정하여, 제 24조 2항에서 '통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원시설 내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더불어 예비학교의 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다.
- 20. 2015년에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82조의2로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 중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치된 학과 등에 특별입학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특별입학전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해당학교의 장이 입학정 원 내에서 일부 정원을 할당하거나 입학정원 외에 추가할 수 있다.

21. 정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5조와 제 6조에 근거하여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 17)을 수립하였다. 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 결혼이민자 등 입국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적응 지원센터를 확대하였다(2014년 88개소 → 2015년 304개소). 공교육에 진입한 중도입국자녀의 체류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고, 출입국사무소와 교육청 간에 아동의 체류와 재학정보 등의 공유가 가능해졌다.

<권고사항 62, 63e>

- 22. 여성가족부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7개소)를 통해 소수민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방문교육사업과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을 개소하였고, 소수민족 아동의 사회적응과 문화적 통합을 위한 체계적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지개학교(Rainbow School)'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0년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설립 및 운영을 하며 통일부의 '하나원'과 MOU를 체결하였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5.0%로 2012년의 조사결과 8.7%에 비해 3.7%p 감소하였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 또한 9.4%로 2012년 조사결과 13.8%에 비해 4.4%p 감소하였다.
- 23.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도서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채용센터 등에 다문화자료실 6개 소를 설치하였고 100여개 기관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24. 교육부는 이민배경 자녀의 학교적응 과정을 위해 예비학교를 설립하고 '한국어교육을 위한 KSL(Ko rean as a Second Language)'를 정규과목으로 운영한다. 이는 소수민족 아동의 이중 언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서 2015년 150개교의 중점학교가 지정되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대안학교 3개소를 운영하며 소수민족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 진로,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D. 여가 및 문화활동 (제31조)

<권고사항 62, 63c>

- 25. 아동의 여가 및 문화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통합문화 이용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정에 대해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관람의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2011년에는 10세이상의 자에 대해 발급하였던 것을 2015년부터는 6세 이상으로 발급대상 연령을 확대하였다.
- 26. 「청소년활동진흥법」을 통해 2010년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설립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방과후나 주말에 청소년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 등 활동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지원하고 있다(<표 VIII-11>, <표 VIII-12> 참조).
- 27.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전국 시·전국교육감 협의회와 함께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아동의 '놀권리'를 존중하고 놀이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어린이 놀이헌장'을 선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놀이와 여가 및 권리보장에 관심이 있는 아동단체와 학계전문가와 함께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 놀이 헌장 제정 및 놀이 정책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권고사항 62, 63e>

사이버폭력 예방

28. 여성가족부는 2012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폭력의 유형 및 정의에 '사이버 폭력'을 추가하고, 예방을 위해 홍보 및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3년 이후 매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사이버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 29. 정부는 학생들 간의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생 스스로 참여하는 체험형 사이버 폭력 및 인터넷·스마트폰 역기능 예방교육 등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 천명당 응답건수는 2013년에는 3.4건, 2014년에는 2.3건, 2015년에는 1.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30.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청소년 사이버폭력을 유발하는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하고 폐쇄 조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학교폭력 긴급전화인 117을 통해 신고되는 사이버 및 문자상담에 대한 대응노력을 펼치고 있다.
- 31. 법무부는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선도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사이버폭력과 관련한 문제행동 유발 전 학생에 대하여는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이버폭력과 관련한 문제행동이 이미 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통해 '재비행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해 '청소년꿈키움센터'를 증설하고, 학생자치법정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 32.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법유해정보, 명예훼손 등 권익 침해, 사이버 폭력 등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윤리교실(71개교), 순회강연(70개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96개교) 등을 통한 학생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과 PC·스마트폰 유해정보 필터링 S/W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77 원스톱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악성댓글과 사이버폭력을 신고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제 🛚 🗶 장

특별보호조치

A. 난민아동 및 무국적 아동 (제22조)

난민법 제정

- 1. 난민이 된 아동이나 난민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22조3)는 비차별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 아동의견 존중의 4대 기본원칙이 난민아동에게도 적용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1992년 12월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가입하고, 1993년 12월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난민인정제도를 처음 도입한 우리나라는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2012년 2월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2. 난민법의 주요내용은 '강제소환금지('강제송환금지(난민인정자 등은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가족재결합(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의무, 난민인정절차 담당 부서 신설, 이의신청제도와 통역서 비스 제공' 등이 있다. 「난민법」시행에 따라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취업허가, 초중등교육 보장, 주거지원 등이 제공된다.

난민아동의 보호

³⁾ 협약 제22조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 난민협약이라 칭함)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년, 난민의 정서라 칭함)

<권고사항 64~65>

3.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아동의 부모가 난민인정을 받았을 경우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의 보장을 받게 되며, 부모가 난민 신청 중일 때는 생계비 지원,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보장하고 있다. 난민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난민신청자와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중등 교육을 보장하고 있으며, 2013년 7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난민인정자의 입학·편입학 가능과 난민인정자 교육비 지원을 위한 세부절차를 수립하여 안내하였다.

법 시행 후 난민신청자의 급격한 증가

4. 1994년 이후 2016년 6월말까지 난민신청자는 18,854명이며, 이 중 598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955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난민신청자가 급증하였다. 2013년 1,574명,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으로 2015년 난민신청자는 2013년 대비 3.6배증가하였다. 그러나 난민인정 및 인도적체류허가 비율은 심사결정종료 대비 15% 수준 이고, 불인정비율은 85% 수준이다(<표 IX-1> 참조).

<권고사항 65~67>

5. 정부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2012년 2월 「난민법」을 제정함으로서 난민인정 신청절차, 이의신청절차 등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난민신청자 중 18세 미만 아동이 난민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건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난민아동의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신고만 인정하고 있어서 부모가 난민신청 중에 태어난 아동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난민신청 중 아동의 생계 및 주거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원기간이 6개월~1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난민심사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부모와 동반하지 않은 아동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일 소지가 있다. '난민 및 망명희망자 자녀의 출생등록을 보장할 것과 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배제 및 본국 송환과정 시 최대 구금일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라'는 권고와 관련하여 국내 출생한 난민 신청자의 자녀는 자국에 출생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여권 없이 외국인등

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모의 출신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출생등록과 함께 부 또는 모의 국가 국적취득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난민아동의 구금배제 원칙과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위탁양육이나 시설보호 등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B.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아동 (제30조)

이민배경 자녀 현황 및 관련 법

- 6. 만 18세 이하 이민배경 자녀는 2006년 2만 5천여 명에서 2015년 20만 8천여 명으로 10년간 급속히 증가하였다(<표 IX-2> 참조).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면, 2020년 이주배경 자녀는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 IX-1】 참조). 2015년 기준,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6세 이하 자녀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최근 6세 이하 자녀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7세 이상의 학령기 자녀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학습부진, 학교 적응력 제고 등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3.)에 다문화가정이 이혼 등으로 해체되더라도 그 자녀는 동법의 지원대상이 된다는 특례조항이 2013년 8월 신설되었다.

이민배경 자녀 지원정책

8. 이민배경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 부처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및 법무부로 구분되며, 주요 정책으로는 다문화유치원, 대안학교, 다문화예비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레인보우스쿨, 조기적응 프로그램 등이 있다. 교육부에서는 다문화 유아의 언어교육과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6년 다문화 유치원 60개소를 마련하였고, 법무부와 협력하여 출입국관리소에 배치된 전담코디네이터를 통해 이민배경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유도하고, 학교적응을 위한 예비학교 124개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중도입국 자녀의 사회적응, 진로, 직업교육을 위해 대안학교 4개교와 학교구성원의 다문화 인식개선과 감수성 제고를 위해 다문화 중점학교 180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생활문화, 교우관계 등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레인보우스쿨을 2015년 17개 기관에 위탁 운영하였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중도입국 자녀에게 외국인등록 시, 입국초기 사회적응 및 진로정보 제공을 위해 2015년 조기적응지원센터를 23개 기관에지정하였다(<표 IX-3> 참조).

<권고사항 68~69>

9. 불법체류자 자녀를 포함한 이주이동의 교육보장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라는 권고에 따라 교육부는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과 재학률 제고 및 공교육 이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할 때 출입국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공무원 통보의무의 적용을 유보 또는 면제'하도록 2013년 1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보의무의면제 조항을 신설하였다.

C.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제32조)

관련법과 정책현황

<권고사항 70a, 71a>

10. 우리나라는 아동노동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규약의 이행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제 5장은 '여성과 소년'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15세 미만과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자'의 근로를 불허하는 최저 고용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후 10시~오전 6시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도덕상 또는 보건 상 위험하거나 유해한 사업 및 갱내 근로에 종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엄격한 처벌 및 제재규정4)을 두고 있다.

^{4) 「}근로기준법」에서는 위험한 환경에서 미성년자를 사용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최저

11. 2005년 범정부차원의 '청소년 근로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데 이어, 2012년에는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연중 4회 이상 사업장 지도점검 및 피해구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3,057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총 2,572개소에서 8,39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여성가족부, 2014). 한편, 2011년 고용노동부는 피해자 구제정책의 일환으로 '1318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연소근로자들이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권고사항 70b, d, 71b, d>

12. 18세 미만 아동의 야간근무 금지, 최저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기준이 엄격히 시행되도록 하라는 권고에 따라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시 이전에는 시정지시 후 미 시정 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재를 강화하였으며, 2015년부터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임금체불 예방 등) 준수를 위한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6월에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권익 교육 및 홍보, 전문상담, 무료 권리구제 지원을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상반기 민간 퇴직인력 150명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하여 법위반 의심 사업장 411개소를 적발하였다.

<권고사항 70c, 71c>

13. 아동의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을 제정하라는 권고에 따라 2016년 2월 일 경험 수련생(인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는 최근 인턴 등 일 경험 수련생을 교육·훈련 목적이 아닌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열정 페이' 문제해결의 일환이며, 현장 정착을 위해 '열정 페이' 사례 제보를 위한 익명게시판을 2016년 5월부터 운영하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상담·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하였다. 향후 가이드라인 정착을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주요 업종별 자율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구제를 위한

고용연령,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위반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담인력 증원 및 상담시간 연장 등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권고사항 70e, 71e>

14. 아동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체제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최저임금 위반 시즉시 과태료 부과 추진을 위한 개정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전문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은 편의점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였다. 2014년 12월 근로권익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노동법 특강 등 수요자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하였다. 향후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확대 및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공인노무사 지원 확대 등 인프라 확충을 실현할 계획이며, 관리 감독 강화, 홍보 내실화, 제도개선 등을 지속할 것이다.

D.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

1. 아동성폭력예방 조치 및 교육 강화

<권고사항 72, 73a>

아동성폭력예방 조치 및 교육 강화

15.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적착취와 학대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제도와 법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UN아동권리협약' 제35조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2조와 제3조에 합치되도록 아동성폭력 예방조치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캠페인과 예방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대책 수립

16. 정부는 2012년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및 2013년 '성폭력방지 종합대책안' 등 아동성폭력범 죄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하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능 강화, 신상정보 공개시스템 개선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의무대상 확대, 112시스템 스마트화와 성폭력전담수사체계 구축, 성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맞춤형 서비스 확대, 국선전담변호인제도와 진술조력인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17. 정부는 아동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심리치료, 수사, 법률지원 등 통합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ONE-STOP센터'(이하, '해바라기센터')를 확대 설치하였다. '해바라기센터'는 아동성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그 기족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2012년 20개소에서 2016년 35개소로 확대되었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예방교육 강화

18. 경찰청은 2013년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CD형태의 '미나의 안전일기' 9만 장을 제작·배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전국 경찰청과 경찰서에서는 굿네이 버스 지부 40개소와 협업하여 지역별 특색을 살린 아동 성범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아동성폭력 근절 위한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 동시 캠페인(2014년 101회)을 개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5대 의무안전교육 프로그램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포함하고(제31조), 6개월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28조).

2. 아동대상 성매매 및 성범죄 처벌강화

<권고사항 72, 73b~73c>

성범죄 관련 법정형 강화

19. 정부는 성적 착취를 위해 이동을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아동성범죄자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형량이 부여될 수 있도록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해 폭행·협박에 의한 구강·항문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제297조의2)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였다(제7조). 한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게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제11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을 강화했다(제13조).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음란행위,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을 추가하였다(제11조 내지 제14조).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20. 정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벌금형을 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를 추가하고(제42조), 성범죄자 신상공 개 범위와 우편고지서 수령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는 2011년 1,949명 에서 2015년 12,473명으로 급증하였다. 정부는 '성범죄자 통합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013년 6월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는 법무부에서(2016.6.30. 기준 41,080건), 공개 및고지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21. 정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경비업, 일반PC방, 청소년 노래연습장 등에 까지 확대하였다.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성폭력범죄의 재범율은 2011년 8.1%에서 2015년 5.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3. 아동성범죄에 대한 효과적 수사 및 기소방안 마련

<권고사항 73b~73c>

아동성폭력전담제 운영

22. 경찰은 2013년 2월 지방경찰청 산하에 '성폭력특별수사대' 208명을 발대하였고, 경찰서 내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여 성폭력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검찰은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효과적인 기소를 위해 전국 검찰청에 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하고, '성폭력 전담검사 T/F'를 구성하여 성폭력사건 수사업무에 적용할 매뉴얼을 작성하여 일선청에 보급하고 있다.

아동대상 성매매 및 성범죄 사건처리기준 강화

23. 정부는 2015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 성구매 재범자에 대한 존스쿨(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성매매 사건처리 기준 준수를 통해 성매매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기소유예율 증가 분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사범에 대하여 구공판(징역형 구형)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성폭력 사건처리기준 일부를 개정 및 시행하고 있다.

성범죄자 DNA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24.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동·청소년대상 성폭력, 살인, 강도 등 11개 유형의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의 DNA를 채취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등 범죄와 관련하여 정부가 확보한 DNA정보는 2014년말 현재 173,024건에 이르고 있다.

4. 성범죄자에 대한 교화 노력

<권고사항 72, 73d>

위치추적 전자감독(전자발찌) 활용

25. 정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성범죄자에 대하여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 '전자감독 신속 대응팀'이 설치되어 전자감독 대상자에 의해 발생하는 제반경보에 24시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불시 현재지 출장 등 밀착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부터 경찰과 전담감독 대상자 신상정보 공유시스템이 구축되었고,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여 긴급한 전자발찌 경보 발생 시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 6월 기준, 전자감독 신상정보 공유건수는 66,594건에 달한다.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제도) 실시

26. 정부는 일부 성폭력 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하여 성충동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에게는 15년 범위 내에서 약물치료를 할 수 있다. 2012년 5월부터 성충동약물치료 대상자 12명을 대상으로 성호르몬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성도착증이 있는 성폭력 사범의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을 촉진시키고 있다.

고위험군 성범죄자 대한 전문치료 및 재활 실시

27. 정부는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개정을 통해 재범 억제력을 제고하고 있다. 2009년 성범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개발 이후 2011년 성범죄자 치료수강명령 전문프로그램, 2013년 성범죄 재발방 지를 위한 순환형 상담치료 프로그램, 2016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등 성범죄자 의 특성 및 범죄요인을 반영한 매뉴얼로 수강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정부는 성폭력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공주치료감호소 내 2009년 1월 100명 수용 규모의 '성폭력 치료재활센터'를 설립하였다. 공주치료감호소 외에도 5개 지역(서울남부, 포항, 청주,

광주, 밀양)에 고위험 성폭력 사범 치료를 위해 상담심리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정심리치료센터'가 개설하였다.

5. 피해자의 출신국을 고려한 다국어지원서비스

<권고사항 72, 73e>

28. 정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제11조 및 제11조의2의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다누리 콜센터(1577-1366)'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다국어 긴급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성폭력·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을 위해 긴급피난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의료·법률·검찰·경찰 등 긴급지원서비스 연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 인신매매, 불법거래, 유괴 (제35조)

<권고사항 74~75>

1.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범죄자 처벌조치

29. 정부는 2013년 「형법」(법률 제11731호, 2013.4.5. 일부개정, 2013.4.5. 시행) 개정을 통해「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입법으로 장(章)명을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변경하고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하였다(제289조).인신매매의 결과적가중범을 상해와 치상, 살인과 치사 등으로 구분하여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하였다(제290조, 제291조). 또한, 기존에방조범 형태로 인정되던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를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도록 하였다(제292조 제2항). 또한 인신매매 관련 규정이 대한민국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을 도입하였다(제296조의2).

30.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위해 인신매매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제11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아동청소년 성매수행위(제13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제14조), 아동청소년대상 알선영업행위(제15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2. 인신매매범죄 단속 및 처벌 강화

31. 정부는 강력·조직적 성격이 강한 인신매매사범에 대하여 '여성·아동전담 및 강력전담검사제'를 활용하여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인신매매사범에 대하여 원칙적 구속기준을 준수하고 있다(<표 IX-12> 참조). 정부는 2012년 8월 2일 처벌이 강화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과 함께 2013년 8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무등록 영업행위, 위장국제결혼 알선, 허위정보제공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387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였다.

성매매목적 인신매매 집중 단속 및 처벌

32. 검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4년 10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의 유형에 따른 처벌기준 재정립,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강화, 성매매행위자에 대한 처분내용 규정, 해외성매매사건 처리·여권발급제한 등 기준 마련,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리 등의 내용을 마련하였다(보건복지부/국제아동인권센터, 2015). 경찰은 해외성매매를 위해 인신매매되는 사례를 막고 자 여권·비자 불법 알선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2014년 3월 17일부터 5월 15일까지 성매매 알선사범을 75명 검거하였다.

3. 인신매매의정서 등 인신매매 관련 국제협약 비준

33. 정부는 「UN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및 「UN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때 때 특히 여성과 이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포함한 동 협약 3개 부속 의정서의 국내 이행입법을 완료한 후,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2015.11.5.에 UN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동 협약 및 3개 의정서는 2015.12.5.부터 발효되었다.

F. 소년사법 운영 (제40조)

1. 소년전문법원 설치

<권고사항 80, 81a>

34. 정부는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방법원·가정법원 내 소년부에서 소년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2011년부터 소년부 확대 설치가 이어지면서 2011년 부산, 2012년 대전·대구·광주, 2016년 인천가정법원이 설립되어 현재 전국에 6개의 가정법원이 있다. 2018년 울산가정법원, 2019년 수원가정법원도 설립될 계획이다.

2. 아동피의자에 대한 법률 및 기타 지원

<권고사항 80, 81b>

35. 아동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국선보조인제도,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를 활용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년법」제17조의2에 따르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이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하며(제17조의2 제1항),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은 것은 총 23,125회이다. 아동피 의자가 수사 시 심리적 안정 등을 이유로「형사소송법」제163조의2에 의거하여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가족이 참관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2015년 「소년법」에서 소년원 송치의 경우에도 원판결에 따른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45조 제3항).

3. 소년수용자 대상 인권친화적 서비스 제공

<권고사항 80, 81c>

소년수용자 처우개선

3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는 19세 이상 성인과 19세 미만 소년을 분리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소년수형자에 대한 전문적 수용처우와 구분수용을 위해 김천소년교도소를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로 지정·운영하고 있다(<표 IX-16> 참조). 정부는 과밀수용문제를 해소 및 인권친화적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 2013년부터 소년원의 집단생활실을 소규모실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대구소년원을 4인 1실로 개선하였고, 2014년 11월 부산소년원에 1인실을 15개 증설하였다.

가족연계 활성화방안 마련

37. 정부는 2016년 3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용소년이 수용생활 중에 면회, 서신 및 전화를 이용하여 필요한 때 수시로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8조). 2~3일간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가정관이 전국 소년원에 16평형 16개동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퇴원을 앞둔 소년원생 가족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함께 승마체험, 발마사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기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가족사랑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말가정학습 등 다양한 가족기능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수용자에 대한 진학 및 직업훈련 의무화

38. 정부는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은 만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들에게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고등학교 63명, 대학교 71명 등 총 134명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다. 김천소년교도소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학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일반학과 교육을 받은 자는 25명,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자는 30명으로서 총 55명이 학과교육을 이수하였다.

39. 정부는 소년원생이 퇴원 후 완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소년원에 취업 및 사후정착지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취업지원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총체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소년원생이 취업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327명이 취업을 통해 사회정착을 하였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대처하고, 수요자 중심을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2014년 전국 8개 소년원에서 13개 직업훈령 직종을 운영하여 소년원생 947명이 자동차정비기능사, 바리스타 등 국가공인자격증 및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김천소년교도소의 경우, 5개 영역(바리스타, 자동차정비, 용접, 제과제빵, 한식조리)의 직업훈련과 정을 통해 2014년 75명, 2015년 75명, 2016년 135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출위 후 지위

40. 정부는 2013년부터 소년원 퇴원생의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년원 담임교사가 소년원 출원 후에도 6-12개월 동안 방문상담, SNS 상담, 생활실태 등을 점검하는 사후서비스인 '희망도우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권해수 외, 2015). 또한 정부는 소년원 출원생을 대상으로 전문기술과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기숙형 직업훈련시설인 '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예스센터' 내에 소년원생의 취업지원을 위해 '창업교육원'을 설립하고,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는 졸업생과 커피바리스타나 자동차 관련기술을 배우기를 원하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현장실무중심의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권리보장

<권고사항 80, 81d>

41. 자유박탈아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년수용자는 소장면담, 청원, 진정, 민원 등을 하여 자신의 처우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불복할 수 있다(제116조). 수용자가 처우에 대한 불복내용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관할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제117조). 보호소년이 처우에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5. 구금 대안조치 확대

<권고사항 80, 81e>

소년사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42. 정부는 구금의 대안처분으로 계속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년에 대하여 선도 또는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결정을 하고 있다.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실질적 보호자가 없어 경제적·정서적 후원이 필요한 소년에 대하여는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한다(「소년사건처리지침」, 제10조)(<표 IX-25> 참조). 최근에 조건부 기소유예의 다양화 일환으로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가정폭력사범 지정상담소 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저작권 조건부기소유예,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사범 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가정폭력사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아동학대사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활용하고 있다(대검찰청(2016)). 또한, 2016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 및 자립지원의 기회를 제공 받아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병과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범 시행 중에 있다.

보호관찰 확대

43.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소년법」제32조제1항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집행유예 조건부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청소년대상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8년 「소년법」 의 개정으로 단기보호관찰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으며, 보호관찰 부과연령이 10세로 하향되었다.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신규 접수인원은 2011년 46,336명, 2012년 47,621명, 2013년 45,040명, 2014년 34,362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대비 평균 30%대를 유지하고 있다(<표 IX-26> 참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확대

44. 정부는 구금처분에 대한 대안으로써 범죄소년에게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하는 사회봉사명령과 일정기간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 등을 통해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는 '수강명령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도 아동에 대한 소년범 사회봉사 명령 집행인원은 7,742명이다(<표 IX-27> 참조). 정부는 「소년법」제33조 제4항에 따라 1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약물 오남용방지교육, 알코올 남용방지교육, 정신·심리치료 교육, 성폭력방지교육, 준법운전교육, 가정폭력방지 교육 등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2014년도 아동에 대한 소년범수강명령 집행인원은 5,526명이다(<표 IX-28> 참조).

<권고사항 102>

소년사법 국제기구와의 교류 활성화

45. 정부는 2012년부터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Save the Children Korea)와 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중 심신장애로 치료가 필요하나 적정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 연간 6천만 원 의료지원을 받고 있다.

G. 범죄목격아동 및 피해아동 보호

<권고사항 82~83>

- 1. 범죄피해자 아동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범죄피해구조 등)
- 46. 정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에 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표 IX-33>참조).
- 47. 정부는 강력범죄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심리적 피해를 입은 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정신과 진료, 심리평가, 심리치료, 법률상담, 사회적 연계, 재활교육,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고, 범죄발생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주거가 가능한 생활관을 약 2주 동안 제공하는 피해자복지센터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치료비 등 의료지원을 확대하여 범죄피해 조기회복 지원을 강화하며,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비, 긴급생계비 및 간병비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으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33% 상항하였다. 더불어 성폭력 피해아동 대상 상담·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센터'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다. 2013년 33개소에서 2014년 34개소, 2015년 36개소, 2016년 37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이중 아동에게 특화된 '해바라기센터(아동형)'은 2016년 기준 8개소이다(<표 IX-32> 참조).

48. 정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강력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 지원 확대로 범죄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2014년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비 5억, 간병비 5억, 긴급생계비 7억을 예산 편성하여 체계적인 치료 지원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국제아동인권센터, 2015). 정부는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 시설 및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2013년에 4개소, 2014년에 4개소, 2015년에 6개소가 설치되었다.

2. 범죄피해자 정보접근권, 피해자 진술권과 조력을 받을 권리

- 49. '15년 4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가 의무화되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이 반드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등을 교부 또는 통지하고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나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인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외에 특화된 안내서를 추가로 교부 또는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6조).
- 50. 범죄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범죄피해자 보호법」제8조의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7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9조).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제259조의2,「범죄피해자보호법」제8조의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4조,「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제40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8조의2).

- 51.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을 위해 법원은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 사소송법」 제294조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 52. 아동 피해자는 형사절차내에서 진술권을 행사하고 피해자구조금청구 등 다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비용으로 법률지원을 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아동피해자에게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진술조력인제도와 신뢰관계인 동석제도가 마련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제27조, 제36조~제38조, 제34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제16조, 제17조). '17년 1월 현재 전국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총 655명이 활동 중인데, 그 중 17명이 국선변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담 국선변호사이다. '16년 기준으로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해 19,336건을 지원하였다. '17년 1월 현재 진술조력인은 총 82명이고, 그 중 10명을 상근 진술조력인으로 선정,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배치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16년에는 70명의 진술조력인이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피해자에 대해 1,203건을 지원하였다.

3. 형사절차에서 보호 받을 권리

53.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크게 안전보호, 사생활 보호, 형사절차 상 피해자·증인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피해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현장 출동 및 응급·임시조 치 등(「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8조, 제8조의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제15조),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친권상실청구(「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9조),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무원 등의 비밀누설금지 및 언론의 사생활보호 의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9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5조)를, 형사절차상 피해자·증인 보호를 위해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9조), 영상물의 촬영, 보존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0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심리의 비공개(「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165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증거보전의 특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등이 있다.

H. 무력분쟁에 참여한 아동

<권고사항 78~79>

- 50.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이하 '무력충돌선택의정서'라고 한다) 제1차 국가보고서 8항(CRC/C/OPAC/KOR/1, para. 8),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고 한다) 제3,4차 국가보고서 468항 및 585항(CRC/C/KOR/3-4, paras. 468 and 58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나아가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징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무력충돌선택의정서' 제1차 국가보고서 12항(CRC/C/OPAC/KOR/1, para. 1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국방부장관이나 병무청장이 특례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제1국민역 편입 연령을 18세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는 없다.
- 51. 대한민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2002년 11월 13일 비준했고, 이 조약에서 관할범 죄를 국내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2월 21일 제정하여 현재까지 계속 시행해오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는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15세 미만인 사람을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52. 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2011년 9월 21일 이후, 대한민국이 해외에 파견한

부대는 6개 부대이고, 2017년 2월 현재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3개 부대, 국방협력을 위해 1개 부대가 파병업무를 수행 중이다. 대한민국은 파병부대 중 특히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을 담당하는 부대의 소속 부대원들이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해당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제 🗶 장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포르노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후속조치

A.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조치

<권고사항 76~77>

아동대상 성매매 등에 대한 법정형 상향조정

1. 정부는 「이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동·청소년 이용 포르노그래피 제작 및 배포행위(제11조), 아동·청소년 매매 행위(제12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제13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제14조), 아동·청소년 이용 알선영업행위(제15조)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매매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포르노제작행위 대상이 됨을 알면서 매매 또는 국외 이송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 외에 포르노그래피인 것을 알면서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완비하였다.

포괄적 인신매매 관련 규정 신설

2. 정부는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및「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해 2013년 「형법」을 개정하여 '약취와 유인의 죄'를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하고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하였다(제289조). 인신매매(제289조 제1항),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인신매매(제289조 제2항),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제289조 제3항) 등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신매매를 위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자는 인신매매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제292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한 감경적용 배제 및 공소시효 특례

3.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에「형법」상 감경 규정에 대한 특례조항을 도입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포함 성범죄를 범한 경우「형법」상 심신장애(제10조 제1항 및 제2항), 농아자(제11조)에 대한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의 범죄 공소시효의 경우「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때부터 진행하도록 하였다.

해외아동성매매에 대한 제재관련 입법노력

4. 정부는 해외 성구매자의 여권발급과 출입국을 제한하고, 관광사업자가 해외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입법노력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일정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여권법」 개정안(함진규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7332)을 마련하였다. 또한 해외원정성매매를 알선·유인하는 여행사업자 적발시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김희정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9599)을 발의하였다.

아동성매매 단속 및 처벌강화

5.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 성구매 재범자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의 원칙적 금지를 통해 성매매에 대한 엄정대응을 하고 있다(<표X-1> 참조). 또한 성매매로 인해 불법이득 환수를 통해 성매매 범죄 유발요인 차단조치를 하고 있으며, 2015년의 범죄수익환수는 637건으로 254억 8500만 원이다.

해외성매매 단속 및 처벌 강화

6.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한국인의 해외성매매 관광 경로 차단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해외성매매 관광모집, 골프관광 등 단체관광을 통한 해외성매매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한국인에 의한 해외성매매가 심각한 지역에 전담경찰인력을 배치하여 적극적 단속을 하고 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해외성매매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해외성매매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성매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7. 정부는 2014년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통해 해외성매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여권발급제한조치는 2009년부터 있어왔으나 2014년부터는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국가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여권법 제12조를 적용해 최대 3년까지 여권발급이 제한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성매매 관련 여권발급제한조치를 받은 사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89건에 달한다.

B. 역외관할권 확립을 위한 입법조치

<권고사항 93>

8. 정부는 2013년 「형법」에 아동매매 등 인신매매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과 함께, 한국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하여도 세계주의를 적용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다(형법 제296조의2). 또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도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 **XI** 장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후속조치

A. 이전 최종견해 권고의 이행

<권고사항 78~79>

1.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15세 미만인 사람을 군대 및 무장단체에 징집 또는 모병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2017년 1월 현재까지 이에 따라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례는 없다. 군대가 이닌 무장단체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모집하거나 적대행위에 이용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무력충돌선택의정서 제1차 국가보고서' 21항(CRC/C/OPAC/KOR/1, para. 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별도의 무장단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B. 군대 징집을 위한 최소 연령

2. 「병역법」에 따르면, 군대 징집을 위한 최소 연령이 18세이지만, 실제 입영은 징병검사를 받게되는 19세 이후에 이루어진다.

C. 자원입대를 위한 최소 연령

3. '무력충돌선택의정서 제1차 국가보고서 13항'(CRC/C/OPAC/KOR/1, para. 13)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역병 자원입대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조문은 「병역법」제20조 제1항에 명시되어있다.

D. 국제협력

- 4. 대한민국은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며, 유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결의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 5. 또한 대한민국은 기여금을 통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분쟁지역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UNICEF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UNICEF 집행이사국(2015년 ~ 2017년)으로서 UNICEF의 아동 무력분쟁 참여 방지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예정이다.
- 6. 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597항(CRC/C/KOR/3-4, para. 59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외무역법」제5조 제4호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기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제3,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2011년 9월 21일 당시에는 9개국과 관련하여 무기 등의 수출을 금지했는데, 현재는 4개국이 추가되어 13개국과 관련한 무기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 7. 특히 대인지뢰와 같은 특정재래식무기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2001년 5월 9일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과 제1의정서 및 제2의정서에 가입하였다. 또한 2001년 5월 24일 제2의정서의 국내이행법률로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이 법률은 탐지가 불가능한 대인지뢰와 같이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사용하거나 그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을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내보내거나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여오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 홍보 및 교육

8. 대한민국은 무력충돌선택의정서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국내 법령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가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의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포함시켜 국민 일반이 누구나 쉽게 접근·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 록

1.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표 I-l> 아동 인구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인구	50,948,272	51,141,463	51,327,916	51,529,338	51,696,216
아동인구	9,691,876	9,431,699	9,186,841	8,961,805	8,736,051
0세	464,374	421,465	419,833	424,563	393,674
1-5세	2,351,729	2,347,790	2,322,002	2,315,338	2,286,414
6-11세	2,907,732	2,843,680	2,817,530	2,772,384	2,772,370
12-17세	3,968,041	3,818,764	3,627,476	3,449,520	3,283,593

인구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 d=MT_ZTITLE&#SubCont 에서 2016년 12월 30일 인출.

<표 I-2> 주요 아동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

구분	시기	법령	제·개정 내용	
신규	제정 2011, 7, 4 시행 2012, 7, 1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서적 빈곤상태에 있는 아동을 위한 기본계획과 추진전략 수립으로 통합적인 사회복지지원체계 마련	
	제정 2012, 1, 26 시행 2013, 1, 27 개정 2016, 2, 3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제정 2012, 2, 10 시행 2013, 7, 1	난민법	• 난민인정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지원 • 난민아동의 초·중등교육 이수 기회 제공	
	제정 2014. 1. 28 시행 2014. 9. 29 개정 2016. 5.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긴급한 조치 및 보호, 가해부모에 대한 법원명령의 치료·상담·교육수강제도 도입 등 가정내 아동학대 문제에 강력한 대응체계 마련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선임 특례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설 	
	제정 2014. 3. 11 시행 2014. 9. 12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선행교육 규제로 인하여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구분	시기	법령	제·개정 내용
	제정 2014. 3. 23	양육비 이행확보 및	• 이혼가정 자녀의 안정적 생활 수준 유지 보장
	시행 2015. 3. 25	지원에 관한법률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도입
	제정 2014. 5. 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도입
	시행 2015. 5. 29	관한 법률	• 정부, 지역, 민간 협업 통한 학교 밖 사각지대 해소
			• 매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
			•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의무화
	2011 ~ 2016	 아 동복 지법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10년간 취업제한
	2011 - 2010		•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
			금지
			• 보호대상이동의 사전 조사, 상담 기능 강화
	2011 ~ 2015	입양특례법	•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제 도입
		10 1 11	• 국외입양 아동의 권익보호 위한 사후관리 도입
	2011 ~ 2016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의 주체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 취약위기가족의 정서적, 경제적 자립역량지원 강화
	2011 ~ 2016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유해업소 범위 확대, 유해약물 등 제공 금지
			• 환각물질 중독전문치료기관 종사자 비밀누설금지
	2012	형법	• 유사강간죄 신설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하는 고소조항 폐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청소년이
	2012 ~ 2016		* 어음·경조년대경 정념회의 응조지요는 피해이동·경조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개정			•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도입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에 아동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정보 제공
	$2012 \sim 2016$		•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화통화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사용 활성화
	2012 ~ 2016	 한부모가족지원법	•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권익 보호 조치 확인 의무
	2010 - 2014		• 미성년자의 입양 허가제 도입
	2012 ~ 2014	민법	• 자녀를 학대하는 친권자의 법원의 재판 제도, 친권의 일시 정지 제도, 친권의 일부 제한 제도의 도입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2012 ~ 2016	 청소년복지지원법	●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1호를 받은 청소년에게
	2012 2010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청소년복지시설로 규정
			• 청소년 차별금지, 의사표명 및 결정권 부여
	2012 ~ 2016	 청소년기본법	「근로기준법」상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2012 19 2010	영소인기 간 합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
			• 무상유이교육을 취학 전 3년의 모든 유아에게 확대
	2012 ~ 2016	유아교육법	•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0040 0040	-XE-20W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부담 금지
	2012 ~ 2016	초중등교육법	• 학력인정학교의 명칭에 따른 사회적 차별 해소

구분	시기	법령	제·개정 내용
			•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 경력이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결격사유로 추가
	2012 ~ 20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2 ~ 2016	학교보건법	• 학교폭력 징후 사전발견 위한 정신건강상태 검사 •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에게 통보
	2012 ~ 20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급 규정,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점검, 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 학교시설에 대한 학부모의 안전점검 참여 보장
	2013 ~ 2014	가사소송법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친권의 제한 제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항에 추가
	2013 ~ 2016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미성년 후견인 및 감독인의 개시, 경질, 종료에 관한 신고제도 도입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부가 출생신고 가능, 자녀의 생명권 보장
	2013 ~ 2016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 광고 제한 강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및 운영 알레르기 유발가능 식품 표시 의무 부여
	2013 ~ 2016	청소년활동진흥법	 이동 및 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할기관 신고 의무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 실시 청소년수련시설 대표 및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2013 ~ 2016	영유이보육법	 무상보육 근거 마련 아동학대로 금고이상 실형 선고받고 10년 경과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불허용 보육교직원의 영유아에 대한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 금지
	2013 ~ 201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가족 등과의 전화통화 허용 등 보호소년 인권강화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의 다양화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인권 친화적인 교육 및 처우 환경 조성
	2014 ~ 2015	소년법	•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도 원판결에 따른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표 Ⅰ-3> 드림스타트사업 연도별 현황

(단위: 개소, 억원, 명)

연 도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설치 시군구	131	181	211	219	229	229
예산(억원)*	372	462	576	632	658	668
대상 아동(명)	44,651	65,724	95,133	107,127	125,562	134,853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제출자료

<표 | -4> 지역아동센터 연도별 현황

(단위: 개소, 억원, 명)

연 도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설치 개소	3,985	4,036	4,061	4,059	4,102	_
지원 개소	3,260	3,500	3,742	3,989	4,113	4,113
예산(억원)	963	1,096	1,272	1,306	1,363	1,414
 이용아동(명)	105천	108천	109천	109천	110천	_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제출자료

<표 I-5> 보육시설, 보육아동 및 보육·가족·여성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명, 억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육시설수	39,842	42,527	43,770	43,742	42,517	_
보육이동수	1,348,729	1,487,361	1,486,980	1,496,671	1,452,813	_
 보육·가족· 여성 예산	25,109	33,847	45,200	57,156	54,278	57,654

출처: 기획예산처 2011, 국회예산정책처 2016

<표 I-6> 연도별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 현황

(단위: 억원)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_	예산	35,786	38,560	41,236	41,145	41,457	43,445

출처: 기획예산처 2011, 국회예산정책처, 2016, 교육부 2017(추경예산 기준)

<표 I-7>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단위: 천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체국가예산(A)	223,138,337,514	236,225,287,896	247,203,163,288	258,585,647,374	268,387,199,393
	유아 및 초 중등 교육	38,804,797,542	41,523,622,672	41,465,434,441	39,565,607,727	41,511,850,346
아동・	소년사법	8,887,000	13,991,000	16,981,000	20,331,000	20,960,000
청소년 에서	아 동복 지	208,479,000	239,061,000	213,511,000	222,801,000	229,831,000
예산 (천원)	보육	3,028,568,000	4,131,345,000	5,273,819,000	4,943,994,000	5,270,824,000
(L L /	아 동폭 력예방	3,192,000	6,811,000	10,397,000	12,482,000	13,650,000
	청소년	47,435,000	57,527,000	67,694,000	67,711,000	68,691,000
	계(B)	42,101,358,542	45,972,357,672	47,047,836,441	44,832,926,727	47,115,806,346
(B)	/(A)*100(%)	18.9	19.5	19.0	17.3	17.6

아동청소년 인구 (~18세 미만)(명)	9,691,876	9,431,699	9,186,841	8,961,805	8,736,051
1인당 지출비용	4,343	4,872	5,118	4,999	5,353
GDP	1,377.5조원	1,429.4조원	1,486.1조원	1,558.6조원	_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비율(%)	3.1	3.2	3.2	2.9	

1) 예산 출처: 기획재정부(2012). 2012 나라살림 예산. pp.3, 109, 151, 241, 240, 245-246, 277-278, 280의 내용으로 구성

기획재정부(2013). 2013 나라살림 예산. pp.3, 116, 167, 271-272, 278, 277, 315, 317-318의 내용으로 구성

기획재정부(2014). 2014 나라살림 예산. pp.3, 134, 175, 263-264, 269, 268, 302-305의 내용으로 구성

기획재정부(2015). 2015 나라살림 예산. pp.3, 129, 164, 168, 255-256, 261, 260, 294, 296-29 7의 내용으로 구성

기획재정부(2016). 2016 나라살림 예산. pp.3, 117, 167, 171, 252-253, 258, 257, 291, 293의 내용으로 구성

- 2) 아동·청소년 예산 산출식: 기획재정부「나라살림 예산」기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051항 유아 및 초중등교육) + (소년사법 예산: 1137항 여성아동인권증진+1632항 소년보호) + (아동복지 예산: 1300항 요보호아동+1400항 아동복지+1000항 복지부의 아동·청소년정책 예산) + (보육 예산: 3100항 보육지원) + (아동폭력예방 예산: 4131항 아동·여성안전정책지원+41 32항 아동·청소년성보호정책지원) + (청소년 예산: 2100항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22 00항 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 3) 인구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 wcd=MT ZTITLE&SubCont 에서 2016년 12월 30일 인출
- 4) GDP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 or.kr/ 에서 2016년 12월 30일 인출
- 5)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비율(%) 산출식: 아동·청소년 예산(총계)/GDP×100 출처: 한국청소년청책연구원(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총괄보고서

<표 | -8> 국가인권위원회 연도별 인권교육 실적

(단위: 명)

연 도	이수자(명)
2015년	37,631
2014년	67,975
2013년	31,615
 2012년	47,415
 2011년	40,998
 누 계	225,634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

<표 I-9> 보건복지부 연도별 인권교육 실적

(단위: 회, 명)

연 도	과 정(회)	이수자(명)
 2016년	5	203
 2015년	1	29
 2014년	13	339
 2013년	43	916
 2012년	37	1,443
 2011년	14	606
는 계	113	3,536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표 | -10> 연도별 소년보호기관 근무 직원 대상 교육 실적

(단위: 회, 명)

연도 구분	'11.	'12.	'13.	'14.	'15.	'16. 7.	총계
외부전문가 초청교육	8회 273명	14회 394명	16회 454명	19회 383명	22회 408명	13회 338명	92회 2,250명
 외부기관 교육참여	14회 14명	45회 53명	46회 46명	36회 50명	55회 55명	31회 96명	227회 314명

출처: 법무부 제출자료

<표 I -ll>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개선 권고 및 홍보 내용

14-	
년도	정책개선 권고 및 홍보 내용
	1월(정책권고) '인권위, 아동인권 보호·학대 예방 위해 최선의 역할 도모'
2016년	5월(정책권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인권보호 정책개선
2010년	5월(정책권고) '인권위, 국가행사 아동참여 시 인권보호지침 마련해야'
	7월(홍보) 아동과 청소년 대상 인권상담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
2015년	2월(정책권고) '인권위, 아동양육시설 아동인권증진 제도개선 권고'
2013년	5월(홍보) 제93회 어린이날을 계기로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을 발표
2014년	10월(홍보) 청소년의 두발단속으로 인한 자유권 침해 관련 결정례 동영상을 제작하여 SNS를 통하여 확산
	7월(정책권고) '미등록 이주아동 퇴건 관련 제도개선 권고'
2013년	(홍보) 유명 만화가들과 함께 인권만화집 '어깨동무'를 발간하여 이동과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인식확산에
	노력
2012년	7월(정책권고) '장애이동에 대한 체벌·폭언은 인권침해'
	2월(정책권고)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권고'
	5월(홍보) 전국 30개 전광판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소개 및 아동인권증진 캠페인 광고
201113	7월:(정책권고) '서울시 무상급식 광고 아동인권 침해'
2011년	11월(정책권고)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접근권 보장돼야'
	(홍보)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 분야를 포함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활동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00선을 모은 '인권의 이름으로 말하다'를 발간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

<표 I -12>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홍보실적

연도	내용	배부처
2016년 7월	'우리에겐 놀권리가 있어요' 책자 발간 '아동권리헌장'리플렛 8만부 제작	시군구 등 지자체에 배부
2015년 11월	아동권리 홍보용 포스터 및 소책자 167,561부 발간	학교,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육이종합지원센터, 시도 및 시군구 관련부서 등에 배부
2015년 8월	초중고등학생용 아동권리 소책자 '아동권리 아하 그렇구나' 발간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표 I -l3> 여성가족부 홍보실적

연도	내용	배부처
2012년 6월	청소년용 권리교재 핸드북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세상' 총 50,000부 제작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의 기관에 발송 청소년의 달 행사 또는 청소년권리교육 시 현장에서 배포
2012년 12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권리 홍보 리플렛' 총 75,000부 제작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지자체 청소년 관련부서 등에 를 배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

출처: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II. 아동의 정의

<표 II-l> 국내법 상 아동관련 법률의 기준연령

용	어	기준연령	법률
0	 동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	9∼24ॴ	청소년기본법
82	소년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아동・	청소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0	동	18세 미만	입양특례법
미성	년자	19세 미만	민법
· 형사 ロ	l성년자	14세 미만	형법
	소년	14세 미만 19세 미만 10세~14세 미만	
소년	촉법소년	10세~14세 미만	소년법
	우범소년	10세 이상	
영유아	영유아	출생 후 6년 미만	
ुम,0	신생아	출생 후 28일	모자보건법
80	O -	24개월 이하	아이돌봄지원법
<u> </u>	-O}	3세~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교육법
 영	우아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보육법
0	 동	18세 미만	한부모가족지원법
0	 동	18세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어린	<u> </u> 의	13세 미만	도로교통법

Ⅲ. 일반 원칙

<표 Ⅲ-1>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201	10년	2011년		201	2012년		2013년		4년	201	15년
사망원인	사망자 (명)	(어린이 10만명 당)										
총계	387	4.7	322	4.2	326	4.3	287	3,9	215	2,9	225	3.2
교통사고	194	2.4	137	1.8	131	1.7	121	1.6	80	1,1	103	1.5
추락	41	0.5	37	0.5	37	0.5	37	0.5	31	0.4	28	0.4
익사	44	0.5	50	0.7	53	0.7	41	0.6	36	0.5	28	0.4
화재	15	0.2	15	0.2	14	0.2	15	0.2	5	0.1	10	0.1
중독	3	0.0	1	0.0	1	0.0	2	0.0	2	0.0	0	0.0
기타	89	1,1	82	1.1	91	1.2	71	1.0	61	0.8	56	0.8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과. 「사망원인통계, 국가승인통계 제10154호」

^{*} 주: 14세 이하 아동에 대한 아전사고 사망자 수

Ⅳ. 시민적 권리와 자유

<표 IV-1>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 정도 ; 연도별 추이

(단위: %)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13	39.6	19.8	27.4	13.2
2014	50.0	21.4	20.9	7.7
2015	33.6	20.3	25.8	20.3
2016	51.5	21.8	14.7	12.0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각 년도)

<표 Ⅳ-2> 학교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 연도별 추이

(단위: %)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14	5.9	18.9	50.5	24.8
2015	4.9	17.0	52.0	26.1
2016	5.3	16.4	51,2	27.1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각 년도)

<표 Ⅳ-3>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정도; 연도별 추이

(단위: %)

구분	연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2013	43.8	22.3	21.6	4.6	7.6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용모(머리모양, 길이,	2014	42.1	21.7	23.0	4.8	8.4
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2015	49.3	21.1	19.4	4.1	6.1
	2016	48.6	18.2	19.4	4.9	8.9
	2013	47.6	21.5	18.5	4.3	8.2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2014	46.7	21.7	23.0	4.8	8.4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2015	56.4	19.0	14.7	3.5	6.4
	2016	52.3	17.4	16.4	4.4	9.4
	2013	83.0	10.5	4.5	0.9	1.1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2014	76.9	14.1	6.9	1.3	0.9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2015	82.2	12.6	4.1	0.7	0.4
중위: 참고원시념점해여고인 참고 이트 원시년	2016	78.9	14.2	5.7	0.7	0.6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각 년도)

<표 Ⅳ-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 정도; 연도별 추이

(단위: %)

구분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12	12.2	17.9	40.3	29.5
	2013	57.9	24.0	13.4	4.7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를 내지 않은 학생들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2014	58.2	25.2	13.2	3.3
이름을 나는 학생을 표에서 6개한다	2015	62.8	24.2	10.7	2.4
	2016	65.2	23.6	9.0	2.2
	2012	16.5	30.6	40.0	12.9
	2013	32.0	36.5	22.9	8.6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	2014	33.8	35.9	22.9	7.3
	2015	36.7	37.0	20.8	5.5
	2016	37.2	36.4	20.9	5.5
	2012	22.2	37.3	24.1	16.4
	2013	40.7	30,3	20.8	8.3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2014	41.8	30.0	20.0	8.1
	2015	45.0	31.5	17.6	5.9
	2016	45.1	30.6	18.1	6.2

^{*} 주: 2012년의 경우,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어, 역으로 계산함. 2012년의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어, 역으로 계산함.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각 년도)

<표 Ⅳ-5> 학교도서관 현황(2015년)

(단위: 개, 명, 권, 천원)

구분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서관수	12,165	6,065	3,110	2,320
직원수	8,662	2,875	1,384	862
좌석수	1,060,256	283,127	175,348	160,152
장서수	315,578,161	34,823,942	41,062,139	33,435,905
연간이용자	78,920,755	59,427,391	9,998,945	7,950,857
연간이용책	157,094,830	111,299,353	16,351,582	12,694,473
예산액	347,524,877	58,676,833	28,552,481	26,360,612

^{*} 주: 1) 예산액의 단위는 천원임.

3) 초 \cdot 중 \cdot 고등학교의 예산액은 자료구입비와 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임.

출처: 한국교육통계연보(2015)

<표 Ⅳ-6>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

76	신간 발행 종수(종)					신간 발행 부수(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44,036	39,767	43,146	47,589	45,213	109,550,227	86,906,643	86,513,472	94,165,930	85,018,354	
아동	9,546	7,495	7,424	7,269	5,572	37,705,148	26,537,234	24,862,658	26,166,569	16,837,125	
점유율	21.68%	18.9%	17.21%	15.27%	12,32%	34.42%	30.5%	28.74%	27.79%	19.80%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통계. p.1(각 년도)

<표 IV-7> 청소년(중·고등학생) 유해매체 이용경험

(단위: %)

		성인용		Ž	성인용 영	상물1)		컴퓨터	휴대폰	온라인	성인용	이성만남
구 분		간행물		비디오· DVD·CD	지상파T V	케이블T V	영화관	성인물2)	성인물3)	사행성 게임	게임	전화번호
	전체	41.1	_	32.0	25.3	14.8	_	37.3	12.3	41.2	47.4	1.5
2011	중	32.2	_	21.8	15.2	9.5	_	24.5	11.7	34.3	47.7	1.3
	고	50.0	_	42.3	35.5	20.1	_	50.3	13.0	48.1	47.1	1.6
	전체	40.0	_	27.5	23.5	26.9	_	45.5	20.5	21.5	32.3	1.8
2012	중	28.5	_	17.8	13.7	15.4	_	30.3	16.0	17.5	29.7	1.3
	고	51.1	_	36.9	33.1	38.1	_	60.3	24.9	25.4	34.9	2.3
	전체	34.1	65.5	3.4	22.8	42.7	5.2	26.0	52.6	13.0	33.1	1.8
2014	중	26.4	50.3	3.3	22.7	41.8	5.0	24.6	50.1	8.7	29.9	1.3
	고	40.2	77.1	3.4	22.8	43.3	5.3	27.1	54.5	16.3	35.5	2.1

^{*} 주: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는 2년 주기 생산 자료임.

- 1) 2014년의 결과값은 다중응답 빈도 값임.
- 2) 컴퓨터를 통해 성인용 간행물이나 영상물을 본 경우 합산값
- 3) 휴대폰을 통해 성인용 간행물이나 영상물을 본 경우 합산값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각 년도)

V. 아동에 대한 폭력

<표 V-l> 체벌관련 교원 징계현황

(단위: 건)

연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합계
2011			10	5	11		26
2012		2	8	1			11
2013		1	1	2	1		5
2014	1	1	5	5	4		16
2015		2	1	2	10	1	16
2016.6			2	3	5	2	12
 계	1	6	27	18	31	3	86

출처: 교육부 추가제출자료 41-2, 2016.

<표 V-2>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결과

(단위: 건)

		_게 원가정					7174			
연도	계	보호	친인척 보호	연고자 보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병원 입원	사망	가정 복귀
2012	6,403	4,079	532	56	31	531	749	38	10	377
2013	6,796	4,376	526	37	25	358	960	38	22	454
2014	10,027	6,666	924	73	56	614	891	52	17	734
2015	11,715	7,760	1,030	114	30	636	899	63	19	1,164

출처: 중앙이동보호전문기관. 전국 이동학대 현황보고서(각 년도)

<표 V-3>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결과

(단위: 건(%))

		πlOF					판	·결	
연도	계	파악 안됨	경찰수사	검찰수사	재판진행중	보안처분	형사처분	보호처분+ 형사처분	기타
2012	473 (100.0)	_	165 (34.9)	123 (26.0)	77 (16.3)	28 (5.9)	80 (16.9)	_	_
2013	544 (100.0)	7 (1.3)	195 (35.8)	118 (21.7)	78 (14.3)	12 (2.2)	103 (18 _. 9)	31 (5.7)	_
2014	1,188 (100.0)	1 (0.1)	327 (27.5)	490 (41 _. 2)	103 (8.7)	89 (7.5)	137 (11.5)	41 (3.5)	_
2015	2,549 (100.0)	7 (0.3)	722 (28 <u>.</u> 3)	1,134 (44.5)	234 (9.2)	210 (8.2)	143 (5.6)	71 (2.8)	28 (1.1)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각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표 V-4>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건(%))

-1-110-							
구분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남	1,269(40.2)	1,443(37.5)	32(8.4)	1,211(42.5)	3,955(38.7)
	2013	여	1,891(59.8)	2,400(62.5)	348(91.6)	1,637(57.5)	6,276(61.3)
		계	3,160(100)	3,843(100)	380(100)	2,848(100)	10,231(100)
		남	3,039(53.3)	3,050(49.4)	52(11.6)	1,619(51.6)	7,759(50.2)
성	2014	여	2,661(46.7)	3,126(50.6)	395(88.4)	1,517(48.4)	7,699(49.8)
		계	5,700(100)	6,176(100)	447(100)	3,136(100)	15,458(100)
	2015	남	3,468(52.1)	3,487(48.5)	60(9.5)	1,636(51.5)	8,651(49.0)
		여	3,193(47.9)	3,710(51.5)	569(90.5)	1,539(48.5)	9,011(51.0)
		계	6,661(100)	7,197(100)	629(100)	3,175(100)	17,662(100)
		0~9세	1,283(40.7)	1,633(42.5)	68(17.9)	1,724(60.6)	4,708(46.0)
	2013	10~17세	1,877(59.3)	2,210(57.5)	312(82.1)	1,124(39.4)	5,523(54.0)
		계	3,160(100)	3,843(100)	380(100)	2,848(100)	10,231(100)
		0~9세	2,255(39.5)	2,669(43.2)	106(23.7)	1,917(61.1)	6,947(54.0)
연령	2014	10~17세	3,444(60.5)	3,507(56.8)	341(76.3)	1,219(38.9)	8,511(46.0)
		계	5,700(100)	6,176(100)	447(100)	3,136(100	15,458(100)
		0~9세	2,680(40.2)	3,166(44.0)	113(18.0)	1,948(61.4)	7,907(44.8)
	2015	10~17세	3,981(59.8)	4,031(56.0)	516(82.0)	1,227(58.6)	9,755(55.2)
		계	6,661(100)	7,197(100)	629(100)	3,175(100)	17,662(100)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각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표 V-5>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유형		건수(비율)	
	πδ	2013년	2014년	2015년
	신체학대	753(11.1)	1,453(14.5)	1,884(16.1)
	정서학대	1,101(16.2)	1,582(15.8)	2,046(17.5)
	 성학대	242(3.6)	308(3.1)	428(3.7)
	방임	1,778(26.2)	1,870(18.6)	2,010(17.2)
	신체학대·정서학대	1,749(25.7)	3,440(34.3)	4,009(34.2)
	신체학대·성학대	21(0.3)	18(0.2)	20(0.2)
	신체학대·방임	153(2.3)	191(1.9)	167(1.4)
	정서학대·성학대	29(0.4)	39(0.4)	65(0.6)
	정서학대·방임	471(6.9)	513(5.1)	495(4.2)
중복	성학대·방임	6(0.1)	9(0.1)	8(0.1)
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53(0.8)	51(0.5)	88(0.8)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411(6.0)	531(5.3)	475(4.1)
	신체학대·성학대·방임	0(0.0)	2(0.0)	1(0.0)
	정서학대·성학대·방임	9(0.1)	7(0.1)	2(0.0)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20(0.3)	13(0.1)	17(0.1)
	소 계	2,922 (43.0)	4,814 (48.0)	5,347(45.6)
	계	6,796 (100.0)	10,027(100.0)	11,715(100.0)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각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표 V-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015년

(단위: 건(%))

학대유형 관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부모	5,338 (80.1)	5,999 (83.4)	252 (40.1)	2,780 (87.6)	14,369 (81.4)
친인척	339 (5.1)	304 (4.2)	60 (9.5)	109 (3.4)	812 (4.6)
대리양육자	848 (12.7)	782 (10.9)	116 (18.4)	261 (8.2)	2,007 (11.4)
타인	28 (0.4)	32 (0.4)	153 (24.3)	0 (0.0)	213 (1.2)
기타	102 (1.5)	74 (1.0)	42 (6.7)	17 (0.5)	235 (1.3)
파악안됨	6 (0.1)	6 (0.1)	6 (1.0)	8 (0.3)	26 (0.1)
계	6,661 (100.0)	7,197 (100.0)	629 (100.0)	3,175 (100.0)	17,662 (100.0)

출처: 중앙이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표 V-7> 시설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연도별 현황

(단위: 건)

종사자유형 연도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 원	초·중·고 교 직원	아동복지시 설종사자	기타시설종 사자	청소년관련 시설종사자	계
2012	110	_	_	99	20	_	229
2013	202	_	_	362	27	_	591
2014	295	99	145	177	29	_	745
2015	427	203	234	296	22	7	1,189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각 년도)

<표 V-8> 시설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연도별 현황

(단위: 건(%))

조치결과 연도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 · 고발 · 사건 처리	만나지 못함	계
2012	134(58.5)	23(10.0)	68(29.7)	4(1.7)	229(100.0)
2013	308(52.1)	100(16.9)	146(24.7)	37(6.3)	591(100.0)
2014	305(40.9)	78(10.5)	361(48.5)	1(0.1)	745(100.0)
2015	220(18.5)	30(2.5)	939(79.0)	_	1,189(100,0)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각 년도)

VI.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표 VI-1> 2016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가지표

구분	평가항목
 시설 및 환경 (20)	생활공간의 개별성, 생활환경의 적절성, 위생상태의 적절성, 안전관리, 영양 및 위생상태
 재정 및 조직운영 (20)	재정 및 회계 관리의 투명성, 후원금(물품) 관리, 급여관리, 문서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행, 외부자원개발 및 네트워크활동 참여여부
 인적자원관리 (10)	시설장의 교육참여, 보육사의 교육참여, 시설장의 전문성
이동보호의 질 (30)	교우 및 학교생활, 아동상담,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 가족관계 프로그램, 퇴소준비아동 자립지원, 아동의 욕구 수립 및 반영, 맞춤형 학습지원, CDA 가입
아동권리 (20)	용돈관리, 개별적 일과, 건강관리, 아동의 권리보장, 아동의 의무교육, 비밀보장, 체벌학대금지, 아동의 고충처리

<표 VI-2>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2008~)

(단위: 명, %)

	구 분	2016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양육시설	1,412 (34.13)	1,818 (39.47)	1,731 (31.45)	2,272 (32.80)	2,246 (30.01)	2,445 (28.46)	2,406 (26.65)	2,997 (32,28)
시설	일시보호시설	799 (19 _. 31)	566 (12 _. 29)	801 (14.55)	676 (9.76)	862 (11 _. 52)	1,751 (20.38)	1,640 (18.17)	1,261 (13.58)
입소	장애이동시설	13 (0.31)	10 (0.22)	39 (0.71)	25 (0.36)	32 (0.43)	23 (0.27)	35 (0.39)	39 (0.42)
	공동 생활가정	468 (11.31)	506 (10 _. 99)	686 (12,46)	775 (11.19)	612 (8.18)	623 (7.25)	686 (7.60)	667 (7 _. 18)
	소년소녀가정	_	13 (0.28)	20 (0.36)	117 (1.69)	128 (1.71)	231 (2.69)	213 (2.36)	178 (1.92)
가정 보호	입양	239 (5.77)	393 (8.53)	478 (8.68)	772 (11.15)	1,253 (16.74)	1,393 (16,22)	1,314 (14.55)	1,304 (14.05)
	가정위탁	1,206 (29.15)	1,300 (28,22)	1,749 (31.78)	2,289 (33.05)	2,350 (31,40)	2,124 (24.73)	2,734 (30,28)	2,838 (30.57)
	계	4,137	4,606	5,504	6,926	7,483	8,590	9,028	9,284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내부자료, 2016

<표 Ⅵ-2-l> 발생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9,284	9,028	8,590	7,483	6,926	6,020	4,994	4,503
빈곤·실직·학대	5,876	4,994	4,613	3,928	3,944	3,668	2,965	2,866
비행·기출	706	707	772	741	708	512	508	360
미혼모	2,349	3,070	2,084	2,515	1,989	1,534	1,226	930
기아	202	222	191	218	235	285	282	321
	151	35	210	81	50	21	13	26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표 Ⅵ-2-2>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0,534	10,153	8,590	7,483	6,926	6,020	4,994	4,503
시설보호 ¹⁾	4,964	4,767	4,842	3,752	3,748	3,257	2,900	2,682
가정위탁	2,838	2,734	2,124	2,350	2,289	2,265	1,688	1,582
 입양 ²⁾	1,304	1,314	1,393	1,253	772	478	393	239
소년소녀가정	178	213	231	128	117	20	13	0

- * 주: 1) 시설보호는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포함됨
 -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법상의 입양 (사인간의 입양)은 미포함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표 VI-3> 아동복지시설 현황(2015. 12말 현재)

(단위: 개소, 명)

구분	계(현	현원)	양육	시설	보호치	료시설	자립지	원시설	일시보	호시설	종합	시설
十正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계	281	14,001	243	12,821	11	447	12	243	12	350	3	140
서울	49	3,002	36	2,532	3	143	5	85	5	125	2	117
부산	21	1,352	19	1,315	0	0	1	27	1	10	0	0
대구	23	764	18	675	2	38	1	39	1	12	0	0
인천	10	570	9	530	0	0	1	0	1	40	0	0
광주	12	608	10	544	0	0	1	18	1	46	0	0
대전	14	524	12	404	1	105	0	15	0	0	0	0
울산	1	127	1	127	0	0	0	0	0	0	0	0
세종	1	42	1	42	0	0	0	0	0	0	0	0
경기	29	1,505	26	1,366	1	39	2	0	2	100	0	0
강원	10	354	8	314	0	0	1	0	1	17	1	23
충북	13	620	11	569	1	34	0	17	0	0	0	0
충남	14	636	13	618	0	0	1	18	0	0	0	0
전북	16	736	14	656	1	63	1	17	0	0	0	0

76	계(현	현원)	양육시설		보호치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호시설	종합시설	
구분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전남	23	1,166	21	1,142	1	17	1	7	0	0	0	0
경북	15	790	15	790	0	0	0	0	0	0	0	0
경남	25	936	24	928	1	8	0	0	0	0	0	0
제주	5	269	5	269	0	0	0	0	0	0	0	0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내부자료, 2016

<표 VI-4>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현황(2014~2016.6월말)

(단위: 개)

	20	14	20	15	2016.0	6월 말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서울(25)	0	0	0	0	1	0
부산(16)	0	3	1	4	1	4
대구(8)	0	0	1	0	1	0
인천(10)	0	0	1	1	1	3
광주(5)	0	1	0	1	0	1
대전(5)	0	4	0	5	0	5
울산(5)	0	0	1	3	1	3
세종(-)	0	0	1	0	1	0
경기(31)	1	12	1	13	1	20
강원(18)	0	10	0	11	0	11
경남(18)	0	2	0	3	0	5
경북(23)	0	1	0	4	0	4
전남(22)	0	12	1	13	1	14
전북(14)	1	1	1	2	1	7
	1	2	1	4	1	4
충북 (11)	0	2	0	6	0	8
제주(-)	0	_	0	_	0	_
계(226)	3	50	9	70	10	89

<표 VI-5> 연도별 국내외 입양현황(2006 이전~2015)

(단위: 명, %)

구분	계	2006년 이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245,600	227,938	2,652	2,556	2,439	2,475	2,464	1,880	922	1,172	1,057
국내	79,088	68,939	1,388	1,306	1,314	1,462	1,548	1,125	686	637	863
	(32,2%)	(30.2)	(52,3)	(51.1)	(53.9)	(59.1)	(62.8)	(59.8)	(74.4)	(54.4)	(64.6)
국외	166,512	159,044	1,264	1,250	1,125	1,013	916	755	236	535	374
	(67.8)	(69.8)	(47.7)	(48.9)	(46.1)	(40.9)	(37.2)	(40 _. 2)	(25.6)	(45.6)	(35.4)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내부자료, 2016

<표 VI-6> 입양아동 법원 허가현황(2013~2015)

(단위: 명, %)

аг	7	#	국	내	국외		
연도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2013	1,185	922	768(64.8)	686(74.4)	417(35.2)	236(25.6)	
2014	1,134	1,172	729(64.2)	637(54.4)	405(35.7)	535(45.6)	
2015	1,078	1,057	629(58.3)	683(64.6)	449(41.7)	374(35.4)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내부자료, 2016

<표 VI-7> 입양아동 발생유형(2013~2015)

(단위: 명, %)

연도		국니	내입양		국외입양				
인도	계	미혼모아동	유기아동	결손가정 등	계	미혼모아동	유기이동	결손가정 등	
2012	686	641	24	21	236	228	1	7	
2013	(100.0)	(93.4)	(3.5)	(3.1)	(100.0)	(96.6)	(0.4)	(3.0)	
2014	637	578	28	31	535	509	_	26	
2014	(100.0)	(90.7)	(4.4)	(4.9)	(100.0)	(95.1)	(0.0)	(4.9)	
2015	683	618	54	11	374	358	16	_	
2015	(100.0)	(90.5)	(7.9)	(1.6)	(100.0)	(95.7)	(4.3)	(0.0)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내부자료, 2016

<표 VI-8> 다문화 유형별 이혼 건수(2012~2014)

(단위: 명)

성별	유형별	2014	2013	2012
	계	12,902	13,482	13,701
1.4	한국인(출생기준)	9,601	10,078	10,216
남	외국인	2,756	2,892	3,009
	한국인(귀화기준)	545	512	476
	계	12,902	13,482	13,701
М	한국인(출생기준)	2,446	2,649	2,881
여	외국인	6,998	7,588	7,878
	한국인(귀화기준)	3,458	3,245	2,942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2~2014

<표 VI-9> 수형자 대상 가족사랑캠프 운영 현황(2011~2016.7월)

갼	히人		인원		ul ¬
연도	횟수	계	수용자	가족	비고
2011	2호	58명	17명	41명	2개 기관(대전,청주女)
2012	36호	825명	237명	588명	35개 기관(소망교 제외)
2013	85회	1,844명	533명	1,311명	48개 기관
2014	88회	2,071명	583명	1,488명	48개 기관
2015	130회	2,827명	791명	2,036명	49개 기관
2016.7.	61회	1,519명	401명	1,151명	48개 기관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

<표 VI-10> 교도소 내 양육유아 현황(2011~2016.9월)

(단위: 명)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 원	2	8	15	4	6	16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

<표 VI-ll>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

(단위: 명)

연도 유형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대리양육 위탁이동	10,947	10,865	10,205	9,732	9,776	9,550	9,127
친인척 위탁아동	4,503	4,371	4,260	3,831	3,843	3,816	3,556
일반 위탁이동	1,158	1,123	1,021	939	977	1,019	1,045
계	16,608	16,359	15,486	14,502	14,596	14,385	13,728

VII.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표 VII-1>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단위: 명)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전	채 학생 수(명)	82,665 (100%)	85,012 (100%)	86,633 (100%)	87,278 (100%)	88,067 (100%)	87,950 (100%)
일반	일반학급(명)	14,741 (17.8%)	15,647 (18.4%)	15,930 (18.4%)	15,648 (17.9%)	15,622 (17.8%)	15,344 (17,4%)
학교	특수학급(명)	43,183 (52,3%)	44,433 (52,3%)	45,181 (52,1%)	45,803 (52,5%)	46,351 (52,6%)	46,645 (53.0%)
(일반학교 계	57,924 (70.1%)	60,080 (70.7%)	61,111 (70.5%)	61,451 (70.4%)	61,973 (70,4%)	61,989 (70,5%)
Ē	특수학교(명)	24,580 (30%)	24,720 (29%)	25,138 (29%)	25,288 (29%)	25,531 (29%)	25,647 (29%)
	수교육지원센터	161 (0.2%)	212 (0.2%)	384 (0.4%)	539 (0.6%)	563 (0.6%)	494 (0.6%)

출처: 교육부. 2011~2016 특수교육통계.

<표 Ⅶ-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10년~16년)

(단위: 개, 명)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특수학교 수	155	156	162	166	167	170
- !	특수학급 수	8,415	8,927	9,343	9,617	9,868	10,065
	계	82,665	85,012	86,633	87,278	88,067	87,950
	장애영아	356	403	578	680	742	656
학	유치원	3,367	3,675	4,190	4,219	4,744	5,186
생	초등학교	35,124	34,458	33,518	33,184	33,591	33,770
수	중학교	20,508	21,535	22,241	22,159	21,108	19,793
	고등학교	20,439	21,649	22,466	22,973	23,422	23,943
	전공과	2,871	3,292	3,640	4,063	4,460	4,602

^{*} 주: 연도별 4.1자 기준

<표 Ⅶ-3> 공립 특수교사 연도별 현황

(단위: 명)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9,182	9,416	10,072	10,695	11,170	11,768

출처: 교육부. 2011~2016 특수교육통계

<표 Ⅶ-4> 특수교사 연수 과정 및 이수 현황

연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집합 및 원격연수 과정 및	71과정	71과정	73과정	83과정	80과정	82과정
이수 현황	15,960명	20,408명	18,847명	17,151명	16,759명	17,055명

출처: 교육부, 2011~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표 Ⅶ-5> 연도별 특수교육 총 예산

(단위: 천원)

연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특수교육 총예산	1,966,284,753	2,138,496,638	2,245,781,336	2,076,048,794	2,227,638,518

* 주: 특수교육 총예산은 시·도교육청 총예산과 국립학교(특수학교, 특수학급) 예산 합계

출처: 교육부. 2015, 2011~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표 Ⅶ-6> 통합학급 담임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여수과정 이수 현황

(단위: 명)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2,843	14,452	29,030	38,537	40,371
(27.3%)	(30%)	(58.8%)	(76.8%)	(81.5%)

* 주: '11년~'12년은 4월 기준, '13~'15년은 12월 기준임.

출처: 교육부. 2011~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표 Ⅶ-7>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수

(단위: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등록률 (%)
2013	2,140,783	773,339	400,698	3,314,820	54.8
2014	2,307,483	964,869	515,049	3,787,401	65.2
2015	2,339,024	984,177	555,737	3,878,938	68.8

출처: 교육부. 2016.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 p3.

<표 Ⅶ-8>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실적 현황

(단위: 명)

구분	'13년	'14년	'15년
실인원	11,466	20,309	22,339
연인원	118,393	184,975	240,343

출처: 교육부. 2016. 내부자료.

<표 VII-9> 중·고등학생의 흡연율 ('ll년~'15년)

(단위: %)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남	12.8	11.3	7.9	6.8	4.8
중	여	11.1	9.2	2.8	2.3	1.7
	전체	12.0	10.3	5.5	4.7	3.3
	남	34.2	33.4	20.7	20.8	18.3
고	여	23.2	22.3	6.3	5.6	4.5
	전체	29.0	28.2	13.8	13.5	11.7
 전체		20.6	19.4	9.7	9.2	7.8

출처: 교육부. 2016. 내부자료.

<표 Ⅶ-10> 운영주체별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시	개소	42,978	2,563	1,415	843	14,674	22,580	155	748
설 수	(비율)	100.0	6.0	3,3	2.0	34.1	52.5	0.4	1.7
아	현원(B)	1,359,398	163,582	69,105	46,038	703,173	303,213	3,947	43,340
동 수	(비율)	100.0	12.0	7.1	3.4	51.7	22.3	0.5	3.2

출처: 대한민국정부.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82.

<표 Ⅶ-ll>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현황

(단위: 개소)

연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시・도	16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시·군·구	170개소	174개소	180개소	180개소	184개소	206개소
 합 계	186개소	190개소	196개소	196개소	200개소	222개소
예산액	8,571	11,045	11,729	12,299	12,669	12,072*

^{*} 주: 2016년부터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별도 내역시업 분리

<표 VII-12> 디딤씨앗통장 저축현황

(2014.12.31. 기준)

구분	총계	시설보호	가정위탁	소년소녀가 장	공동 생활가 정	장애인 시설	가정복귀	기초수급
지원이동(명)	56,479	14,103	10,302	277	2,292	1,480	1,486	26,539
1인당 입금액(원)	36,601 (평균)	37,350	35,841	47,333	37,001	23,127	23,528	38,398

* 주: 만기경과 제외

출처: 보건복지부. 2015. 2014 보건복지백서

<표 VII-13> 연도별 학교밖 급식지원현황

(단위: 명)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원 대상자	257,276	271,606	415,519	476,444	485,811	471,961	438,042	416,092	381,838	350,109

* 주: 교육부에서 제공되는 학기 중 중식지원 실적은 제외된 수치임.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급식지원현황 홈페이지. 2017. 2,28 인출

Ⅷ. 교육·여가 및 문화

<표 Ⅶ-l> 학생 취학률

(단위: %)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유치원	26.2	30.9	40.2	40.9	44.0	47.4	47.3	49.4	50.7
초등학교	97.2	98.8	99.2	99.1	98.6	97.2	96.4	98.5	98.1
중학교	95.0	94.6	97.0	96.7	96.1	96.2	97.7	96.3	94.9
고등학교	89.4	91.0	91.5	91.9	92.6	93.6	93.7	93.5	94.1
고등교육 기관	52.5	65.2	70.1	71.0	68.4	69.0	68.2	68.1	68.5

- * 주: 1) 취학 적령 인구는 통계청(2010)의 '장래 인구 추계'를 기준하였음. 2010년까지는 확정 인구이며, 2011년 이후는 잠 정 추계치이므로 다음 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 2) 취학 적령은 유치원의 경우 3~5세, 초등학교는 6~11세, 중학교는 12~14세, 고등학교는 15~17세, 고등교육기관 은 18~21세임.
 - 3) 고등학교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가 포함됨.
 - 4)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수에는 연도 및 기관에 따라 17세 이하의 학생이 포함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kess.kedi.re.kr/kessTheme/zipyo?s urvSeq=0000&survCd=3410&uppCd1=030207&menuld=m 02 03 01&itemCode=03

<표 VIII-2> 학생 진학률

(단위: %)

구분	른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초등학교 →	중학교과정	99.9	99.9	99.9	99.9	99.9	99.9	99.9	99.9	99.9
중학교 → 고	등학교과정	99.6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7
	전체	62.0	73.4	75.4	72.5	71.3	70.7	70.9	70.8	69.8
	일반계고	83.9	88.3	81.5	75.2	76.2	76.8	_	_	_
	전문계고	42.0	67.6	71.1	63.7	54.4	48.0	_	_	_
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일반고	_	_	_	(75.8)	(76.6)	(77.7)	78.7	78.9	78.0
TOTA 1년	특수목적고	_	_	_	(67.4)	(64.2)	(60.0)	59.6	58.4	55.9
	특성화고	_	_	_	(61.0)	(50.0)	(41.7)	37.6	36.1	35.0
	자율고	_	_	_	(69.3)	(72.6)	(74.7)	75.7	75.8	74.9

- *주: 1) 중학교과정은 중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 2) 고등학교과정은 고등학교(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와 기타(방송통신고, 고등기술학교)가 포함됨.
 - 3)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개정되어 기존 유형 졸업자는 2013년까지 발생함. ()는 참고 수치로 2013년 9월 현재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진학률임.
 - 4)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포함됨(2005년 부터 국외진학자가 포함됨).
 - 5) 일반계고 및 전문계고 진학자는 2011년 이후는 대학 등록자 기준, 2011년 이전은 대학 합격자 기준임(전체 고등학

교 진학률은 대학 등록자 기준으로 보정한 수치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통계청(2010) 장래추계인구. http://kess.kedi.re.kr/kessTheme/zipy o?survSeq=0000&survCd=3411&uppCd1=030207&menuld=m_02_03_01&itemCode=03

<표 VIII-3> 학교수

(단위: 개교)

구분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소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2000	18,659	8,494	5,267	2,731	1,957	1,193	764	_	_	_	1	210
2005	19,167	8,275	5,646	2,935	2,095	1,382	713	_	_	_	1	216
2010	19,850	8,388	5,854	3,130	2,253	1,561	692	_	_	_	ı	225
2011	19,974	8,424	5,882	3,153	2,282	_	_	1,554	120	499	109	233
2012	20,137	8,538	5,895	3,162	2,303	_	_	1,529	128	499	147	239
2013	20,336	8,678	5,913	3,173	2,322	_	_	1,525	138	494	165	250
2014	20,540	8,826	5,934	3,186	2,326	_	_	1,520	143	499	164	268
2015	20,729	8,930	5,978	3,204	2,344	_	_	1,537	148	498	161	273
2016	20,835	8,987	6,001	3,209	2,353	_	_	1,545	152	497	159	285

- * 주: 1) 유·초·중등학제 기준임
 - 2) 학교수에는 신설학교, 기존학교, 휴교가 포함됨(폐교, 분교는 제외함)
 - 3) 기타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포함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kessTheme/zipyo?survSeq=0000&survCd=3 443&uppCd1=030207&menuld=m_02_03_01&itemCode=03

<표 Ⅶ-4> 교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소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2000	370,245	28,012	140,000	92,589	104,351	63,374	40,977	_	_	_	ı	5,293
2005	417,680	31,003	160,143	103,835	116,411	79,158	37,253	_	_	_	ı	6,288
2010	455,907	36,461	176,754	108,781	126,423	90,735	35,688	_	_	_	ı	7,488
2011	469,136	38,662	180,623	110,658	131,083	_	_	90,464	5,801	27,327	7,491	8,110
2012	476,065	42,235	181,435	111,004	132,953	_	_	89,538	6,289	27,283	9,843	8,438
2013	482,686	46,126	181,585	112,690	133,414	_	_	89,469	6,678	26,759	10,508	8,871
2014	488,363	48,530	182,672	113,349	134,488	_	_	90,174	6,934	26,938	10,442	9,324
2015	489,515	50,998	182,658	111,247	134,999	_	_	90,878	7,245	26,588	10,288	9,613
2016	491,152	52,923	183,452	109,525	135,427			91,474	7,416	26,306	10,231	9,825

- * 주: 1) 유·초·중등학제 기준임
 - 2) 기타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가 포함됨(방송통신중·고 제외).
 - 3) 교원수에는 정규교원(휴직 교원 포함)과 기간제교사가 포함되며, 퇴직교원과 강사는 제외됨.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kessTheme/zipyo?survSeq=0000&survCd=3 445&uppCd1=030207&menuld=m_02_03_01&itemCode=03

<표 Ⅶ-5> 교원 l인당 학생수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수목 적 고	특성화고	자율고
2000	19.5	28.7	20.1	19.9	20.9	18.2	_	_	_	_
2005	17.5	25.1	19.4	15.1	15.9	13.5	_	_	_	_
2006	17.0	24.0	19.4	15.1	15.8	13.5	_	_	_	_
2007	16.2	22.9	19.1	15.3	16.1	13.5	_	_	_	_
2008	15.5	21.3	18.8	15.5	16.4	13.4	_	_	_	_
2009	15.2	19.8	18.4	15.7	16.7	13.3	_	_	_	_
2010	14.8	18.7	18.2	15.5	16.5	13.1	_	_	_	_
2011	14.6	17.3	17.3	14.8	_	_	15.8	11.0	12.5	15.2
2012	14.5	16.3	16.7	14.4	_	_	15.4	10.3	12.1	14.6
2013	14.3	15.3	16.0	14.2	_	_	15.2	10.0	12.0	14.3
2014	13.4	14.9	15.2	13.7	_	_	14.6	9.7	11.6	13.9
2015	13.4	14.9	14.3	13.2	_	_	14.1	9.3	11.4	13.7
2016	13.3	14.6	13.3	12.9	_	_	13.7	9.1	11.0	13.5

- * 주: 1) 교원수에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기간제교원이 포함됨(강사 및 퇴직교원 제외, 휴직교원 포함).
 - 2)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지율고) 으로 분류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kessTheme/zipyo?survSeq=0000&survCd=9 30&uppCd1=030206&menuld=m_02_03_01&itemCode=03

<표 Ⅶ-6> 학급당 학생수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수목 적 고	특성화고	자율고
2000	26.3	35.8	38.0	42.7	44.1	40.3	_	_	_	_
2005	24.2	31.8	35.3	32.7	33.9	30.0	_	_	_	_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수목 적 고	특성화고	자율고
2006	23.7	30.9	35.3	32.5	33.7	29.9	_	_	_	_
2007	22.7	30.2	35.0	33.1	34.3	30.1	_	_	_	_
2008	21.9	29.2	34.7	33.7	35.1	30.0	_	_	_	_
2009	21.6	27.8	34.4	34.2	35.9	29.8	_	_	_	_
2010	21.0	26.6	33.8	33.7	35.5	29.1	_	_	_	_
2011	20.9	25.5	33.0	33.1	1	_	34.7	28.4	28.5	33.5
2012	21.6	24.3	32.4	32.5	_	_	34.2	26.7	28.0	32.3
2013	21.5	23.2	31.7	31.9	_	_	33.6	25.8	27.6	31.5
2014	19.7	22.8	30.5	30.9	_	_	32.4	25.0	26.9	30.7
2015	20.0	22.6	28.9	30.0		_	31.3	24.4	26.4	30.3
2016	19.7	22.4	27.4	29.3	_	_	30.3	24.0	25.7	30.2

^{*} 주: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으로 분류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kessTheme/zipyo?survSeq=0000&survCd=9 29&uppCd1=030206&menuld=m_02_03_01&itemCode=03

<표 Ⅶ-7>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단위: %)

구분	초등교	초등교육~고등교육		초등교육		전기초등교육			후기중등교육 및 중등후 비고등교육			=	고등교육	2	
	전체	정부	민간	소계	정부	민간	소계	정부	민간	소계	정부	민간	소계	정부	민간
 한국	5.9	4.0	1.9	1.5	1.3	0.1	0.9	0.8	0.1	1.2	0.9	0.3	2.3	0.9	1,3
OECD평균	5.2	4.5	0.7	1.5	1.4	0.1	1.0	0.9	0.1	1.2	1.1	0.2	1.6	1,1	0.5
캐나다	6.1	4.6	1.5	2.1d	1.9d	0.2d	x(3)	x(1)	x(2)	1.5	1.3	0.1	2.5	1.3	1.2
핀란드	5.7	5.6	0.1	1.3	1.3	0.0	1,1	1,1	0.0	1.5	1.5	0.0	1.8	1.7	0.1
프랑스	5.3	4.7	0.5	1.2	1,1	0.1	1,3	1.2	0.1	1,3	1.2	0.1	1.5	1.2	0.3
독일	4.3	3.7	0.6	0.6	0,6	0.0	1.3	1.2	0.0	1.2	0.8	0.4	1.2	1.0	0.2
이탈리아	4.0	3.7	0.3	1,1	1.0	0.0	0.7	0.7	0.0	1.3	1.2	0.1	1.0	0.8	0.2
일본	4.5	3.2	1.2	1.3	1.3	0.0	0,8	0.7	0.0	0.8	0.7	0.2	1.6	0.6	1.0
러시아	3.8	3.2	0.6	x(9)	x(7)	x(8)	x(9)	x(7)	x(8)	2.3	2.1	0.3	1.4	0.9	0.5
영국	6.7	5.2	1.5	1.9	1.7	0.2	1.2	1.0	0.2	1.7	1.4	0.3	1.8	1,1	0.8
미국	6.2	4.2	2.0	1.6	1.5	0.1	0.9	0.8	0.1	1.0	0.9	0.1	2.6	1.0	1.7

^{*} 주: 1) 이 표에 제시된 공교육비 수치에 학년구분 없는 프로그램(한국의 경우 교육 행정기관 지출)은 제외됨

²⁾ 한국의 2013년도 GDP는 1,429조원임

³⁾ 한국의 정부재원에는 해외재원이 포함되지 않음

⁴⁾ x(1), x(2), x(3)은 자료가 해당 표의 열 1~3(초등교육)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고, x(7), x(8), x(9)는 자료가 해당 표

- 의 열 7~9(후기중등교육 및 중등후비고등교육)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함.
- 5) d는 다른 범주(교육단계)의 자료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함.
- 6) GDP 대비 공교육비 산출식=(정부부담 금액+민간부담 금액)/GDP*100
- 출처: OECD 교육지표 2016, 재원별,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13). http://kess.kedi.re.kr/stats/s chool?menuCd=0105&cd=1552&survSeq=2016&itemCode=01&menuId=m_010502_02_01050202&up pCd1=01050202&uppCd2=01050202&flag=B

<표 Ⅶ-8> 특수학교 현황

(단위: 개교, 개, 명)

					학	급수					학급당	학생수		
구분	학교 수	교원 수	전체	유치원 과정	초등학 교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 교과정	전공과 과정	전체	유치 원 과정	초등 학교 과정	중학 교 과정	고등 학교 과정	전공 과 과정
2000	129	4,555	2,534	242	1,193	578	521	_	9.3	6.2	8.6	10.0	11.6	_
2005	142	5,724	3,073	274	1,321	701	679	98	7.7	4.6	6.6	8.8	9.5	10.1
2010	150	6,857	3,760	281	1,340	910	974	255	6.3	3.6	5.3	6.6	7.5	9.4
2011	155	7,407	3,973	283	1,374	963	1,046	307	6.2	3.7	5.2	6.3	7.2	9.3
2012	156	7,654	4,086	280	1,376	983	1,088	359	6.1	3.9	5.0	6.2	6.9	9.1
2013	162	8,012	4,274	285	1,392	1,061	1,134	402	5.9	3.9	4.8	5.9	6.6	8.9
2014	166	8,297	4,374	289	1,402	1,091	1,147	445	5.8	3.6	4.7	5.8	6.5	8.8
2015	167	8,542	4,476	294	1,428	1,070	1,190	494	5.7	3.7	4.6	5.7	6.4	8.6
2016	170	8,720	4,611	308	1,472	1,074	1,224	533	5.5	3.6	4.5	5.4	6.2	8.2

- * 주: 1) 학교수에는 신설학교, 기존학교, 휴교가 포함됨(폐교, 분교는 제외함)
 - 2) 교원수에는 정규교원(휴직 교원 포함)과 기간제교사가 포함되며, 퇴직교원과 시간강사는 제외함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kessTheme/zipyo?survSeq=0000&survCd=3393&upp Cd1=030201&menuId=m_02_03_01&itemCode=03

<표 Ⅶ-9> 다문화학생 현황

(단위: 명)

				국제	결혼가정					외국인가정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ステル	7=	전체
1 &	소계	국내 출생	중도 입국	소계	국내 출생	중도 입국	소계	국내 출생	중도 입국	초등 학교	중학 교	고등 학교	
2012	31,951	29,282	2,669	9,179	8,194	985	3,083	2,536	547	1,789	448	326	46,776
2013	35,829	32,823	3,006	10,305	9,162	1,143	4,358	3,793	565	3,531	975	500	55,498
2014	44,808	41,546	3,262	11,702	10,316	1,386	6,312	5,562	750	3,417	804	422	67,465
2015	54,156	50,191	3,965	12,443	11,054	1,389	7,411	6,688	723	6,006	1,384	735	82,135
2016	64,547	59,970	4,577	13,099	11,475	1,624	8,664	7,589	1,075	9,425	1,981	1,152	98,868

^{*} 주: 1) 다문화가정 학생수=국제결혼가정 자녀(국내출생자녀+중도입국자녀)+외국인가정 자녀

2) 국내출생 자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3) 중도입국 자녀: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4)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외국인 근로자 자녀, 재외동포 자녀 등)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표 Ⅶ-10> 사교육비와 참여율

(단위: 천원, %)

¬ ы		12	<u></u>	 		사교육 참여율					
구 분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초등학교	241	219	232	232	231	84.6	80.9	81.8	81.1	80.7	
중학교	262	276	267	270	275	71.0	70.6	69.5	69.1	69.4	
고등학교	218	224	223	230	236	51.6	50.7	49.2	49.5	50.2	
전체	240	236	239	242	244	71.7	69.4	68.8	68.6	68.8	

* 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월평균 사교육비 총액÷학생수

출처: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 2938#quick_02;

<표 VIII-ll>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신규건립 및 기능보강 지원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소수	70(36)	66(27)	72(37)	76(24)	108(33)	102(37)
예산액	49,417	41,477	50,550	44,991	65,564	48,117

* 주: ()안은 신규 건립 지원 개소임.

출처: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표 VIII-1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총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특화시설
계	797	181	245	193	43	126	9
공공	528	179	239	62	20	19	9
민간	269	2	6	131	23	107	0

* 주: 2015, 12, 31,기준 출처: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IX. 특별보호조치

<표 IX-l> 연도별 난민현황(1994~2016.6)

(단위: 명)

구분	신청	철회	심사결정 종료	인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1994~2009	2,492	494	1,665	171	85	1,409
2010	423	62	250	47	35	168
2011	1,011	90	339	42	20	277
2012	1,143	187	649	60	31	558
2013	1,574	331	586	57	6	523
2014	2,896	363	2,378	94	539	1,745
2015	5,711	280	2,134	105	194	1,835
2016.1~6	3,604	381	2,370	22	45	2,303
총계	18,854	2,188	10,371	598	955	8,818

* 주: 심사결정종료는 인정, 인도적체류, 불인정의 합계임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2016년 6월, 일부보정)

<표 IX-2> 이민배경 자녀 현황(2010~2015)

(단위: 명, %)

구분	계	6세 이하	7~12세	13~15세	16~18세
2015	207,693	117,877	56,108	18,827	14,881
	(100.0)	(56.8)	(27.0)	(9.1)	(7.1)
2014	204,204	121,310	49,949	19,499	13,466
	(100.0)	(59.4)	(24.5)	(9.5)	(6.6)
2013	191,328	116,696	45,156	18,395	11,081
	(100.0)	(61 _. 0)	(23 _. 6)	(9.6)	(5.8)
2012	168,583	104,694	40,235	15,038	8,616
	(100.0)	(62.1)	(23.9)	(8.9)	(5.1)
2011	151,154	93,537	37,590	12,392	7,635
	(100.0)	(61.9)	(24.9)	(8.2)	(5.0)
2010	121,935	75,776	30,587	8,688	6,884
	(100.0)	(62.1)	(25.1)	(7.1)	(5.7)

출처: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2015

<표 IX-3> 현행 부처별 주요 이민배경 자녀지원 정책현황

대상	사업명	내용	소관부서		
	다문화유치원	다문화 유아의 언어교육 강화를 위한 다문화 유치원 운영('15년 30개원 시범운영)	교육부		
미취학 및	언어발달 서비스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언어발달 정도 진단 및 언어교육 실시(언어발달지도사 '15년 300명)	여가부		
저학년	방문교육 (자녀생활서비스)	학업성취가 낮고 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녀에게 독서, 숙제지도 등 생활지원('15년 216개소)	여가부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이중언어로 부모와 소통할수 있는 환경조성('15년 217개소)	여가부		
학령기 자녀	대학생 멘토링	다무하·탈부하생 대상 기초하려 즉지 강하			
	대안학교	대안학교 다문화 학생 대상 대안학교 운영('15년 4개교) 고교: 서울 다솜학교, 폴리텍다솜학교 초등: 지구촌 학교 초중고 통합: 한누리학교			
	글로벌 브릿지	다양한 분야(수학, 과학, 언어, 글로벌리더십, 예체능)에 잠재력을 지닌 자녀를 인재로 육성('15년 17개교)	교육부		
	다문화 예비학교	한국어, 한국문화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 운영('15년 100개교)	교육부		
スーロフ	레인보우스쿨	초기적응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어교육, 특기적성 교육 등('15년 17개소)	여가부		
중도입국 자녀	무지개Job이라	진로캠프, 인턴십 및 멘토링, 진로탐색과정 운영 등 단계별 진로지원 프로그램 제공('15년 6개소)	여가부		
	조기적응프로그램	중도입국자녀에게 외국인등록 시, 입국초기 사회적응 및 진로정보 제공('15년 23개 기관)	법무부		
일반가정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일반 청소년의 다문화 이해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15년 23개교)	여가부		
자녀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 이해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다문화수용성 제고('15년 150개교)	교육부		

출처: 여성가족부 b, 제1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회의자료, 2016

<표 IX-4> 연령별·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2010~2014)

(단위: 천명, %)

78										
구분	2010	구성비	2011	구성비	2012	구성비	2013	구성비	2014	구성비
15~24세	1,375	100.0	1,387	100.0	1,479	100.0	1,502	100.0	1,604	100.0
남자	514	37.4	523	37.7	590	39.9	616	41.0	664	41.4
여자	861	62,6	863	62.3	890	60.1	886	59.0	940	58.6
15~19세	204	14.8	227	16.4	230	15,6	224	14.9	244	15.2
남자	81	5.9	96	7.0	97	6.6	99	6.6	111	6.9
여자	123	8.9	130	9.4	133	9.0	125	8.3	134	8.4
20~24세	1,171	85.2	1,160	83.6	1,249	84.4	1,278	85.1	1,359	84.7
남자	433	31.5	427	30.8	497	33,3	518	34.5	553	34.5
여자	738	53.7	733	52.9	757	51.1	761	50.7	807	50.3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표 IX-5>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2014)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25,1	74.9
서버	남자	2,100	24.3	75.7
성별	여자	1,917	25.9	74.1
학교급	중학교	974	13.2	86.8
	고등학교	3,043	28.9	71.7
	일반계	19,763	26.1	73.9
고교계열	특성화	539	52.5	47.5
	특목/자율	531	15.4	84.6
	낮은편	1,259	32.6	67.4
학업성적	중간	1,654	23.3	76.7
	높은편	1,029	17.0	83.0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1, 2014

<표 IX-6>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2007~2014)

(단위: %)

연령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5~24세	19.4	22.2	23.3	24.9	22.9	26.2	25.0	26.3
25~29세	5.5	5.0	6.8	6.0	5.1	5.8	5.0	5.4
30~39세	6.7	6.1	7.1	5.7	4.9	5.1	4.3	4.5
40~49세	10.4	10.1	12.2	10.3	8.7	8.8	7.6	7.9
50~59세	17.1	15.4	19.6	16.4	15.3	15.4	13.9	13.8
60세 이상	45.8	45.7	53.8	50.5	47.4	47.3	44.2	46.4

출처: 성재민, 월간 노동리뷰 2014년 7월호.

<표 IX-7> 성범죄자 신상정보 연도별 현황

(단위: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신상정보 등록자	1,949	3,731	5,815	10,166	12,473
인터넷 공개자	667	1,263	1,061	1,134	1,404
 우편 고지자	316	1,137	815	1,123	1,383

^{*} 주: 연도별 누적인원

<표 IX-8>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설치기관

(단위: 개)

연도	2013	2014	2015	2016
설치기관	26	40	46	56

출처: 법무부 제출자료 85,2016.

<표 IX-9>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동종 재범률

(단위: 건,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성폭력 실시사건	685	874	1,747	2,370	2,650	2,464
 동종 재범자	15	21	30	48	53	22
(재범 률)	(2.19)	(2.40)	(1.72)	(2.03)	(2.00)	(0.89

출처: 법무부 제출자료 85,2016.

<표 IX-10>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단위: 명, 건)

		지원실적(건)							
연도	지원인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실용교육*	치료회복 프로그램	귀국지원			
2015	69	145	300	3	12	17			
2014	58	124	198	1	5	15			
2013	36	106	104	1	8	20			
2012	69	66	98	1	10	20			
2011	39	40	165	23	8	25			

출처: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90, 2016.

<표 IX-ll> 다누리콜센터 운영실적

(단위: 건)

7 8	2011 2012		2013	20	2015	
구 분 	2011	2012	2012 2013		4~12월	2015
계	69,743	87,215	89,887	110,51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58,044	66,890	68,524	18,010	06 250	116,039
다누리콜센터	11,699	20,325	21,363	6,148	86,358	

* 주: '14년 1 \sim 3월은 통합전 두 센터의 합, '14년 4월 이후는 통합 후 실적임

출처: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90, 2016.

<표 IX-12> 여성·아동대상 인신매매 관련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

(단위: 명)

구	구 분		2013	2014	2015	2016.6
 접수		247	7 298 415 414		414	219
처분	^분 계	260	291	401	436	192
711	구공판	45	60	94	79	23
기소	구약식	0	2	0	0	0
불:	기소	156	156	202	248	128
7	타	59	73	105	109	41

^{*} 주: 1) 관련죄명: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2) 불기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3) 기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출처: 법무부 제출자료 91, 2016.

<표 IX-13> 전체범죄인원 중 소년범죄인원의 구성 비율

(단위: 명. %)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전체범죄자	1,907,641	2,117,737	2,147,250	1,879,548
소년범죄자	83,068	107,490	91,633	77,594
	4.4	5.1	4.3	4.1

* 주: 2009년 이후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범죄자는 '만 19세 미만자' 기준임.

출처: 대검찰청(2007-2015), 범죄분석.

<표 |X-14> 연도별 국선보조인 조력 횟수

(단위: 회)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7
 국선 <u>보조</u> 인	3,762	4,096	4,606	4,101	4,408	2,152

출처: 법무부 제출자료 98, 2016.

<표 |X-15> 소년교도소 수용 현황

(단위: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수용인원	114	170	152	114

출처: 여성가족부(2015), 청소년백서.

<표 IX-16>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수용기간

(단위: 명, (%))

기간 연도	계	7호 (의료)	8호 (1개월)	9호 (단기)	10호 (장기)	평균 수용기간 (개월)
2011	2,559 (100)	69 (2.7)	1,329 (51.9)	644 (25.2)	517 (20.2)	5.1
2012	3,211 (100)	103 (3.2)	1,660 (51.7)	792 (24.7)	656 (20 _. 4)	4.6
2013	2,867 (100)	105 (3.7)	1,317 (45.9)	938 (32.7)	507 (17.7)	5.17
2014	2,531 (100)	93 (3.7)	930 (36.7)	842 (33 <u>.</u> 2)	666 (26 _. 3)	7.30

^{*} 주: 수용기간별 인원은 처분변경, 처분취소, 유죄판결 항고 등을 제외하고 퇴원 및 임시퇴원 보호소년 출원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2013년 7월 '보호소년 처우지침' 개정에 따라 비행유형별, 재비행 횟수에 따른 (임시)퇴원 신청 점수 조정으로 평균 수용기간이 늘어남

출처: 여성가족부(2015), 청소년백서.

<표 IX-17> 소년수용자 1일 급식비

(단위: 원)

연도	2014	2015	2016
소년수용자 1일 급식비	4,759	4,997	5,097
성인 수용 자 1일 급식비	3,962	4,160	4,243

출처: 법무부 제출자료 99, 2016.

<표 |X-18> 소년원생 진학 현황

(단위: 명)

연도 7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7
계	111	137	115	134	154	139
대학교	22	45	45	71	91	83
고등학교	89	92	70	63	63	56

출처: 법무부 제출자료 99, 2016.

<표 IX-19>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단위: 명)

연도 ^{건분}	2011	2012	2013	2014
교육인원(계)	75	55	74	55
일반학과교육	35	25	37	25
 방 송통 신고	40	30	37	30
(졸업인원)	(13)	(5)	(10)	(6)

출처: 여성가족부(2015), 청소년백서

<표 IX-20> 소년원 학생 취업 현황

(단위: 명)

연 도	2011	2012	2013	2014
취업인원	261	313	273	327

출처: 여성가족부(2015), 청소년백서

<표 |X-21> 소년원생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현황

(단위: 명)

연 도	2011	2012	2013	2014
취득인원	670	900	774	947

출처: 법무부 제출자료 99, 2016

<표 IX-22> 김천소년교도소 직업훈련 실적

(단위: 개, 명)

연 도	2014	2015	2016
· 훈련 종목 (개)	4	4	5
훈련인원(명)	75	75	135

출처: 법무부 제출자료 99, 2016

<표 IX-23> 체험학습 참가인원

(단위: 명)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7
체험학습 참가	4,753	4,626	2,441	3,120	2,414	1,304

출처: 법무부 제출자료 99, 2016

<표 IX-24> 보호소년의 연도별 청원현황

(단위: 건)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7
 청원	4	13	0	5	4	1

출처: 법무부 제출자료 100, 2016

<표 |X-2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단위: 명(%))

					조건부	기소유예		
구분 연도	소년범 접수인원	기소 유예	법사랑 위원 선도	대안교육 (꿈키움 센터)	보호 관찰소 선도 위탁	기타 선도 교육	기타	계
2011	104,108	41,722	1,399	305	3,584	_	550	5,838 (14.0)
2012	119,122	44,371	5,736	329	4,212	_	2,771	13,048 (29,4)
2013	100,835	35,130	4,656	1,208	3,925	254	2,591	12,634 (36.0)
2014	89,910	31,037	3,181	4,801	4,589	2,224	821	15,616 (50.3)
2015	90,467	30,371	3,374	5,352	3.875	1,989	427	15,017 (49,4)

출처: 대검찰청(2016),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내실화방안; 대검찰청(2012~2015), 검찰연감; 대검찰청(2011~2 015), 범죄분석.

<표 IX-26> 연도별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단위: 명, %)

구분 연도	전체보호관찰 인원	소년보호관찰 인원	소년보호관찰 비율
2011	121,188	46,336	38.2
2012	108,495	47,621	43.9
2013	105,753	45,040	42.6
2014	121,517	34,362	28.3

출처: 여성가족부(2015), 청소년백서

<표 |X-27> 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명)

구분		협력집행 직접 직접						
연도	총계	집행	소계	자연 보호	복지 분야	공공 시설	대민 지원	기타
2011	8,346	1,481	6,865	51	6,490	168	89	67
2012	8,175	1,510	6,665	10	6,259	192	130	74
2013	8,857	1,941	6,916	1	6,293	220	314	88
2014	7,742	1,816	5,926	2	5,291	152	386	95

출처: 여성가족부(2015), 청소년백서

<표 |X-28> 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명)

구분		T. T. T.				협력집형	:H		
연도	총계	직접 집행	소계	약물	준법 운전	심리 치료	가정 폭력	성폭력	기타
2011	10,135	9,518	617	_	11	277	_	74	255
2012	10,612	10,026	586	4	8	152	_	63	359
2013	7,864	7,374	490	2	9	240	_	48	191
2014	5,526	5,340	186	_	2	103	2	23	56

출처: 여성가족부(2015), 청소년백서

<표 IX-29>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실적

(단위: 건)

연 도	2012	2013	2014	2015
지원실적	2,908	8,084	13,363	15,106

출처: 법무부 제출자료 103, 2016

<표 IX-30> 스마일심리지원 현황

(단위: 건, 개소)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원건수	2,087	3,599	6,772	17,064	28,931	43,750
선터개소수	1	2	4	6	8	10

출처: 법무부 제출자료 2017

<표 IX-31>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급금액	5,410	6,251	7,912	7,071	9,771	9,257

출처: 법무부 제출자료 2017

<표 IX-32> 해바라기센터 이용 성폭력 피해아동

(단위: 명)

연도	성별	합계	13세 미만	13~18세
	남	575	417	158
2012	여	7,405	2,735	4,670
	전체	7,980	3,152	4,828
	남	629	423	206
2013	여	8,327	3,234	5,093
	전체	8,956	3,657	5,299
	남	704	545	159
2014	여	8,292	3,515	4,777
	전체	8,996	4,060	4,936
	남	627	433	194
2015	여	7,421	3,069	4,352
	전체	8,048	3,502	4,546

출처: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103,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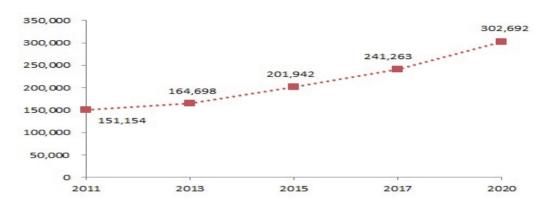
<표 IX-33>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현황

(단위: 건수, 액수)

구분 기분	유	족구조금	징	장해구조금 중		상해구조금	합계	
연도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2011	242	4,991,479	22	250,361	23	168,193	287	5,410,033
2012	244	5,664,511	18	421,426	29	164,749	291	6,250,686
2013	227	6,795,756	32	751,881	53	363,636	312	7,912,273
2014	233	6,056,915	28	541,441	70	472,268	331	7,070,624
2015	240	8,281,652	31	510,493	111	978,575	382	9,770,720
2016	198	8,080,208	26	760,835	55	416,225	279	9,257,268

출처: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09, 2016년 8월 24일 인출)

【그림 IX-1】이민배경 자녀 장래인구추계(2011~2020) / (단위: 명)



출처: 여성가족부 a,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6년 시행계획, 2016

X.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포르노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표 X-l>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 접수 및 처분현황

(단위: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6
 전	수	3,325	5,563	2,002	1,487	788
처분	^분 계	3,441	5,625	2,037	1,493	729
71 4	구공판	214	317	339	237	131
기소	구약식	1,029	679	114	41	12
불기	기소	937	2,321	843	638	290
フ	타	1,261	2,308	741	577	296

^{*} 주: 1) 관련죄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2조(아동·청소년 대매행위),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출처: 법무부 제출자료 92, 2016.

²⁾ 불기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³⁾ 기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MEMO	
IVIEIVIO	

MEMO	
IVIEIVIO	

MEMO	
IVIEIVIO	